연구부정행위 검증 및 처리 관련

연구윤리 실무 매뉴얼

비매품
13060
9 788996 900023
ISBN 978-89-969000-2-3

연구부정행위 검증 및 처리 관련 연구윤리 실무 매뉴얼

한국연구재단

연구부정행위 검증 및 처리 관련

연구윤리 실무 매뉴얼

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한국연구재단

연구부정행위 검증 및 처리 관련

연구윤리 실무 매뉴얼

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한국연구재단

연구부정행위 검증 및 처리 관련

연구윤리 실무 매뉴얼

머 / 리 / 말

2005년도 발생한 서울대 교수팀의 줄기세포연구 논문 조작 사건은 연구윤리가 연구자 개인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학문 공동체, 더 나아가 국가의 신뢰도와 경쟁력 제고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인식하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다. 이 사건 이후 우리 정부는 2007년 2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마련함으로써(과학기술부 훈령 제236호),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들의 연구윤리 · 진실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하여 각 대학, 정부출연(연) 등의 연구기관과 학회는 자체 「연구윤리 지침」 혹은 「연구윤리진실성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다. 또한 정부와 대학 등은 역할 구분에 따라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하는 등 연구진실성 확보와 연구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해 오고 있다.

그 동안 정부, 대학, 연구기관은 이러한 연구윤리 확립 노력을 통하여 연구자들의 연구윤리에 대한 무관심과 낮은 연구윤리 의식을 상당히 개선하였으며,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이를 검증하고 사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연구진실성 검증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짧은 기간 동안의 가시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각 대학이나 정부 출연(연) 등 연구기관은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해결과제가 아직 남아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각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제정 · 운영하고 있는 「연구윤리 지침」 혹은 「연구윤리진실성 위원회에 관한 규정」 등은 연구부정행위의 범위가 무엇이고, 연구진실성 검증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과 일반적인 방향만을 담고 있으며, 어떻게 해야 할 지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은 미흡한 수준으로서 업무수행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1년과 2012년 개정된 교육과학기술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과 2007년 과학기술부가 편찬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가 연구부정행위 검증을 위한 실제 조사 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지만, 부정행위 유형별 구체적인 조사 요령, 각종 서식, 조사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법률적 사항 등에 대한 언급이 부족하여 이에 대한 별도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

아울러 그 동안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활동에서 대학 교수나 전문 연구자, 그리고 대학원생들의 연구윤리 의식 고취와 바람직한 연구의 실천 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과 참고 자료의 제공은 많았지만, 연구윤리 행정실무자가 연구윤리 관련 제규정을 적용하고, 연구부정행위 검증시 부딪히는 여러 고민의 해결과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관심과 정보지원은 상대적으로 취약했다. 그러나 연구자의 책임있는 연구수행을 위해서는 연구자 자신의 높은 연구윤리 의식과 탁월한 연구수행 능력은 물론이고, 그 연구와 관련된 제반 규정(지침)이나 행정적인 절차의 명확한 이해와 준수가 중요하며, 이 과정에서 연구윤리 실무자들의 조언과 도움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연구윤리 실무자는 연구자들이 바쁜 연구 일정으로 인해 자신의 연구와 관련된 규정과 절차를 충분히 인지 또는 확인하지 못할 때, 관련 규정에 대한 직, 간접적인 조언을 해당 연구자에게 해줄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배경하에 〈연구윤리 실무 매뉴얼〉은 각 대학 및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윤리 실무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무적인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연구윤리 업무 수행 과정상 직면하는 어려움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기획되고 제작되었다. 특히 동 매뉴얼은 연구윤리 실무자로서 연구윤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와 더불어, 연구부정행위의 검증을 공정하게 처리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그 절차에 따라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안내하였다. 동 매뉴얼에서 담고 있는 핵심적 내용은 ① 연구부정행위의 개요, ② 연구부정행위 검증의 주요 개념, ③ 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 ④ 연구부정행위 검증 후속조치 ⑤ 연구부정행위 사전예방 노력 등이다.

각 대학 및 연구기관의 연구윤리 실무자들은 동 매뉴얼을 통하여 자신이 처리해야 할 구체적인 업무 내용이나 절차 등에 대한 정보나 서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타 기관에서 수행했거나 수행 중인 연구윤리 관련 정보나 자료를 참고할 수 있어 실무에 많은 도움을 받을 것이다. 연구윤리 실무자를 위한 동 매뉴얼이 앞으로 1차 조사기관 연구윤리 실무자들의 연구부정행위 검증 과정에서 널리 유용하게 활용됨으로써, 연구윤리 업무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 우리나라의 연구윤리 수준을 국제적 수준으로 높이는데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

끝으로 동 매뉴얼이 나오기까지 관심을 가지고 노고를 아끼지 않은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본서는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한 정책연구과제 〈연구윤리 실무 가이드라인 제시를 위한 매뉴얼〉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정책연구에 참여하여 좋은 아이디어와 글을 써 주신 이원용 교수님을 비롯한 연구진, 연구비를 제공하고 매뉴얼의 방향에 대해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 주신 교육부(구. 교육과학기술부)와 그리고 매뉴얼의 초안에 대한 소중한 의견을 주신 자문가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

동 매뉴얼은 정책연구용역과제인 〈연구윤리 실무 가이드라인 제시를 위한 매뉴얼〉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에, 내용 중에 일부는 연구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서 한국연구재단의 공식적인 의견과 다를 수 있음

목 차 / Contents

제1장 연구부정행위의 개요

1. 연구윤리의 중요성 ····· 10
2. 연구활동의 스펙트럼 ····· 14
3. 연구부정행위의 개념 및 발생원인 ····· 19

제2장 연구부정행위 검증의 주요 개념

1. 적용대상 및 검증주체 ····· 30
2. 검증시효 및 검증원칙 ····· 35
3. 검증기간 및 검증기구 ····· 38
4. 제보자와 피조사자 ····· 42

제3장 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

1. 제보접수 ····· 49
2. 예비조사 ····· 52
3. 본조사 ····· 61
4. 판정 ····· 75
5. 이의신청 ····· 76
6. 검증 시 유의사항 ····· 78

제4장 연구부정행위 검증 후속조치

1. 조사결과의 보고 ····· 84
2. 조사기록의 보관 및 정보의 공개 ····· 86
3. 징계 등의 후속조치 ····· 90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제5장 연구부정행위 사전 예방

1. 연구윤리 제도 및 인프라 확립 ····· 94
2. 연구윤리 교육 강화 ····· 97
3. 연구윤리 정보 제공 활성화 ····· 103

[부 록]

1.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과학기술부 훈령) ····· 106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미래창조과학부령) ····· 118
3. 연구윤리 실무 관련 Q&A ····· 124

[관련서식(예시)]

1. 피조사자의 소명자료 제출에 대한 공문 서식 ····· 138
2. 예비(본) 조사위원의 서약서 ····· 140
3. 연구진실성 조사위원회 회의록 ····· 141
4. 예비조사 보고서 양식 ····· 144
5. 최종결과 보고서 양식 ····· 147

제1장

연구부정행위의 개요

1. 연구윤리의 중요성 | 10

2. 연구활동의 스펙트럼 | 14

3. 연구부정행위의 개념 및 발생원인 | 19

제1장 연구부정행위의 개요

1. 연구윤리의 중요성

- 연구자들이 연구를 수행 할 때 지켜야할 규칙이나 윤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연구자로서 정직하고 책임있는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며, 이는 연구자 간, 연구자와 연구 대상 간, 연구자와 대중 및 국가, 더 나아가 인류와의 관계에서 반드시 실천해야 할 가치나 덕목과 관련됨
  - 연구수행의 모든 과정에서 최소한 데이터의 위조나 변조 또는 표절 등 거짓과 속이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며, 인간이나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일 경우 그 연구 대상을 존중하고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는 것 등은 바로 연구자들에게 주어진 의무이자 도리임
  - 연구자는 연구자로서 마땅히 알고 지켜야 할 이러한 가치나 윤리를 고려하면서 그에 따라 연구를 수행할 때 연구부정행위로부터 멀어지며 그만큼 연구의 진실성(research integrity)을 증진시킬 수 있음[1)]

- 그러나, 일부 연구자들은 연구자들이 지켜야 할 규칙이나 도리를 위반하면서까지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가 있음
  - 그 위반이 의도적이었느냐 의도하지 않았느냐에 따라 그 개인이 받을 비난이나 처벌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개인의 연구부정행위가 단지 연구윤리를 위반한 개인에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임
  - 연구자에게 요청되는 연구의 지향 가치나 원칙이 연구수행 전 과정에서 지켜지지 않을 때, 연구자는 물론이고 학문 공동체 전체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는 곧 우리가 연구윤리의 필요성이나 중요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연구윤리를 준수해야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임

1) 이인재, "연구활동 스펙트럼과 연구진실성", 대학피부미용학회지,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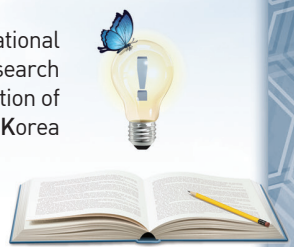

- 연구윤리가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 옳은 연구 방향인지를 잘 모르거나 혼란스러울 때, 연구자 개인으로 하여금 명확하게 바람직한 방향을 안내해 주고, 연구부정행위나 부적절한 행위로부터의 유혹을 떨쳐 버리게 함으로써 연구자가 진실하고, 당당하게 책임있는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그러므로, 연구윤리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하는 연구자가 많을수록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할 수 있고 책임있는 연구수행의 문화를 확립할 수 있음
  - 연구자가 책임있는(바람직한) 연구수행을 위한 올바른 태도를 지니고 성실하게 실천함으로써 개인의 명예를 높이고, 그가 속한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음
  - 연구윤리를 준수함으로써 좋은 점은 개인의 올바른 연구윤리 확립이 현재는 물론이고 미래의 국가 경쟁력(국가 브랜드) 제고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임
  - 개인 연구자의 성실함과 정직성은 궁극적으로 그가 속한 학문 공동체의 발전과 국가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크게 기여함
  - 21세기 무한경쟁시대에서 국가 경쟁력은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연구의 경쟁력에 기반을 두고 있으나, 연구 과정이나 결과 산출에서의 정직성, 객관성, 책임성을 등한시한 채, 단순히 남보다 먼저 연구 성과를 산출했다고 해서 높은 경쟁력을 갖는 것이 아님
  - 지켜야 할 공정한 룰을 지키지 않고 앞서 간 것보다, 조금 늦더라도 지킬 것을 제대로 지켜서 얻는 결과가 진정한 가치를 갖기 때문임

- 연구윤리가 중요한 두 번째 이유로는 연구윤리의 확립이 학계와 문화계에 고질화된 윤리 불감증, 편법주의, 양적 업적주의의 폐해를 극복하여 연구에 신뢰를 증진시킴으로써 개인의 품격 및 사회의 질(social quality)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임

- 한국 사회는 1960년대 이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세계가 경탄할 만큼 빠른 속도로 놀라운 발전을 이룩해 왔음. 그리하여 현재 한국 사회는 UN에 가입되어 있는 190 여개 국가 중 1인당 국민소득이 2만불을 넘어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권 초반에 올라있고,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들이 세계 시장을 누비고 있을 뿐만 아니라 K팝, 한류 문화,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가 배출되어 세계적인 선풍을 일으키고 있음

현재 우리 사회의 품격은 경제 규모와 달리 오히려 거꾸로 내려가고 있음

-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가브랜드위원회와 삼성경제연구소가 공동 개발한 '2011 국가브랜드지수 조사 결과'를 보면 2011년 우리나라의 국가브랜드 실체 지수는 50개국에서 15위를 기록했으나 이미지는 19위에 그쳤음
- 국가의 실제 경쟁력보다 국제사회에서 바라보는 모습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얘기이며,[2] 이는 우리 사회가 성장한 만큼 건강하지 못하고 수준이 높지 않다는 것을 의미함

교수신문이 전국의 대학 교수 5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국가나 사회를 위해 일하는 공인(고위공무원, 교수, 기업인, 법조인, 정치인 등)에게 가장 필요한 인성과 태도, 능력으로는 전문성을 우선 꼽았고, 그 다음으로 청렴, 공정성, 신뢰, 정직, 공동체 의식 등 주로 인성과 태도에 관련된 덕목을 꼽았고, 가장 부족한 덕목으로는 신뢰, 정직, 청렴, 공동체 의식인 것으로 나타났음

- 공인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은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어느 사회, 어느 시대를 구분할 것 없이 중요한 문제이며, 투철한 공인의식이 없다면 사회의 품격 제고를 기대할 수 없음
- 여기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중요한 시사점은 21세기 무한경쟁 시대에서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도덕성을 지녀야한다는 점임[3]

2) 서울경제신문, 2012년 4월 19일.
3) 교수신문, 2012년 4월 17일.

- 공인이든 대중이든 우리 사회의 품격을 크게 떨어뜨리는 학연, 지연, 혈연에 입각한 맹목성과 편협성의 가치 추구 그리고 관행화된 불법과 탈법, '정당한 절차를 무시해도 원하는 성과만 얻으면 그만이다'라는 윤리적 불감증의 총체적 축소판을 우리의 올바르지 못한 연구수행의 문화에서 찾아볼 수 있음
  - 2012년 총선을 전후하여 불거진 국회의원 당선자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사건을 포함하여 그동안 목격했던 여러 연구부정행위 사건이 재발하여 학문(연구)활동에 대한 불신과 사회적 혼란을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됨

- 그러므로 바람직한 연구수행 또는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해서는 연구부적절행위 또는 의심스런 연구수행을 줄이고 연구자들의 연구윤리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연구윤리교육과 정책이 이루어져야 하며, 아울러 연구자는 연구수행의 전 과정에서 바람직하고 책임있는 연구활동의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았는지 항상 주의 깊게 살피고 반성해야 함

2. 연구활동의 스펙트럼

좋은 연구수행 또는 책임있는 연구수행 – (Good Research Practice, GRP) or (Responsible Conduct of Research, RCR)

- 좋은 연구수행 또는 책임있는 연구수행은 연구자나 연구기관이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이상적인 기준(ideal standard)를 의미하며[4], 연구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임

- 책임있는 연구수행은 연구부정행위와 의심스런 연구수행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올바르지 않은 연구수행과 대비되는 것으로, 미국의 연구진실성국(Office of Research Integrity, ORI)이 연구자가 지켜야할 연구의 핵심 가치들로 정직성(정직한 정보 전달과 연구자 윤리강령의 성실 이행), 정확성(연구결과의 정확한 보고와 데이터의 최소 오차), 효율성(현명하고 낭비 없는 자원 이용), 객관성(명확한 설명과 부당한 편견의 기피)을 들고 있는데, 연구자가 바로 이러한 가치들을 잘 알고 실천하는 것을 말함

연구부정행위 – (Research Misconducts)

- 연구부정행위는 연구자가 속임수, 자기기만 등으로 인하여 연구자 자신은 물론 그가 속한 연구공동체와 국가 사회에 심각한 해로움을 유발하는 것으로, 흔히 FFP라고 불리는 위조(날조, fabrication), 변조(falsification), 표절(plagiarism)이 대표적으로 여기에 속함[5]

4) Nicholas H. Steneck, "Fostering integrity in Research : Definitions, current Knowledge, and Future Directions," Science and Engineering Ethics, Vol. 12, 2006. p. 54.

5) 이인재, "연구진실성과 연구윤리," 한국윤리교육학회, 『윤리교육연구』, 제21집, 2010. p. 271.

- 연구부정행위는 '연구와 관련된 모든 나쁜 행위의 집합'이 아니라 '진실성 검증 체계 내에서 규율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나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적용상의 문제로 연구부정행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 연구비의 부적절한 사용이나 개인적 착복은 의심의 여지없는 부정행위이지만 '연구부정행위'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고 형법상의 범죄에서 다루는 것이 일반적임
  - 명예저자나 중복 출판 등 부당한 논문 저자 배분의 문제도 연구자가 하지 말아야 할 행위임은 분명하지만 미국, 일본을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는 연구부정행위에 이를 포함하고 있지 않음

- 이에 따라 특히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정의가 지나치게 좁게 내려진 국가에서는 바람직하지 못한 것은 분명하지만 연구부정행위의 정의에는 포함되지 않는 행위를 '연구부적절행위(research misbehavior)'라 하여 연구부정행위와 구별하기도 함[6)]

- 앞에서 언급한 책임있는 연구수행이 이상적인 연구 행위라면, 연구부정행위는 가장 나쁜 행위로서 모든 연구자들이 피해야만 할 것으로 동의할 수 있는 그런 행위들을 포함함

의심스런 연구수행 또는 연구 부적절 행위 – (Questionable Research Practice, QRP)

- 의심스런 연구수행 또는 연구 부적절 행위는 연구부정행위처럼 심각한 행위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코 바람직하거나 좋은 연구수행도 아닌, 결과적으로 책임있는 연구수행을 방해하거나 위해하는 행위임[7)]

6) 박기범, "연구부정행위",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2011.
7) 과학기술부, 『실천연구윤리』, 2007.

- 의심스런 연구수행(QRP)은 편견에 사로잡힌 연구나 데이터 관리의 소홀 및 부주의, 빈약한 연구 설계 등과 같이 연구부정행위에 비해 연구윤리에서 벗어난 정도가 심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연구부정행위와 책임있는 연구수행 사이에 위치하여 어떤 연구수행이 잘 한 것인지 잘못한 것인지 그 경계가 모호한 회색 지대(grey areas)를 말함

- 미국 National Academy of Society(NAS)에서 규정한 QRP는 연구데이터의 부적절한 보존, 부적절한 연구 데이터의 기록, 연구에 중요한 기여 없는 저자의 공로인정, 최초 연구의 경우 그 연구의 자료에 대한 합당한 공개 및 공유에 대한 거절, 연구 심사나 리뷰를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데이터의 공유나 공개가 없이 연구결과를 공개하거나 사실을 잘못 기술하는 경우, 부적절한 연구 감독 또는 멘토링, 연구결과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부적절한 데이터의 통계 처리 등임

- 이에 비해 연구부정행위는 연구 윤리에서 벗어난 정도가 매우 심각하고 의도적일 때를 말함. 즉, 이는 해당 연구자 사회에서 받아들이는 정직하고 책임있는 연구행위에서 심각하게 벗어나는 것으로서 의도적으로 시행되었거나(intentionally), 알면서 행하였거나(knowingly), 부정행위 여부에 개의치 않고 무모하게(recklessly) 이루어졌을 때를 말함[8)]

8) 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Federal Policy on Research Misconduct, federal register, 2000, 65.

종합

◆ 지금까지 설명한 세 가지 연구활동 스펙트럼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음

〈표 1〉 연구활동의 스펙트럼

유형	바람직하지 못한 연구활동(행동)		바람직한 연구활동(행동)
	연구부정행위 (Research misconducts)	연구부적절행위 또는 의심스런 연구수행(QRP)	책임있는 연구수행(RCR), 좋은 연구수행(GRP)
내용	위조, 변조, 표절 (FFP)	부당한 논문저자표시, 중복게재, 의심스런 데이터의 누락(data massage or cooking), 무임승차 등	
비고	연구수행에서 가장 나쁜 행동	연구부정행위와 책임있는 연구수행 사이의 회색지대	연구수행에서 도달해야 할 이상적인 행동

◆ 미국 NIH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 3,247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연구자가 저지르는 연구부정행위의 발생 비율은 1%이하인데 비해, 의심스런 연구수행은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50%까지 발생하고 있음[9)]

◆ 의심스런 연구수행은 연구부정행위에 비해 그 위해성이 적다고 할 수 있지만, 발생 빈도가 훨씬 더 높다는 것은 연구자들이 그만큼 의심스런 연구수행을 크게 문제시 하지 않거나 위반해도 별 문제 없겠지 하는 안이한 생각을 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여짐

- 우리는 연구자들이 평소 연구수행에서 아무리 사소하지만 그리고 지금까지 지속되어 온 관행이라는 미명하에 의심스런 연구수행 또는 부적절한 연구를 대수롭지 않게 자주 하다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연구부정행위를 습관적으로 하게 된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함
- 이는 궁극적으로 연구자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해 놓고도 당연시 하거나 몰랐다고 궁색한 변명을 하는 잘못된 행동으로 쉽게 연결되곤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함

9) Nature, 435: pp. 737~738, 2005.

- 지금까지 설명한 책임있는 연구수행 내지 좋은 연구수행, 연구부정행위, 의심스런 연구수행 또는 연구부적절 행위(무임승차, 공로 불인정, 권익침해, 부당한 자료 확보, 데이터의 왜곡, 실험기기나 장비의 관리 허술, 편견에 사로잡힌 연구수행 등)가 어떤 특성과 관련성을 갖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음
  - 책임있는 연구수행은 연구자가 달성해야 할 핵심적인 가치인 정직성, 정확성, 효율성, 객관성이 확보되었을 때 가능하며, 이는 연구자가 연구수행 과정에서 관련될 수도 있는 왜곡, 편향, 과장, 자기기만, 실수, 부주의, 태만, 이해충돌 등을 현명하게 잘 극복해 냄으로써 성취될 수 있는 것임
  - 연구자는 의도적으로나 또는 무의식적으로 연구부정행위와 연구부적절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이는 바로 연구자가 경계해야 할 왜곡, 편향, 과장, 자기기만 등을 지혜롭게 탈피하지 못할 때 발생함. 또한, 연구자는 이 때문에 연구자로서 당연히 실천하고 달성해야 할 정직성, 정확성, 효율성, 객관성을 확보할 수 없어 궁극적으로 연구자의 이상적 표준인 책임있는 연구수행을 불가능하게 만듦

3. 연구부정행위의 개념 및 발생원인

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개념

1) 우리나라

- 2005년도 말 서울대 교수팀의 줄기세포연구 논문 조작 사건을 계기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2007년 2월에 마련됨(과학기술부 훈령 제236호)
  -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들이 연구윤리 ·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

- 2011년 6월에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개정(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218호) 되었고, 2012년 8월 일부 재개정(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260호) 되었음
  - 연구부정행위의 범위를 연구진실성을 직접적으로 저해하는 위조(날조), 변조, 표절 이외에도,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부정행위 조사를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를 포함시킴(제4조)
  - 자신의 연구결과 사용과 관련하여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게재 · 출간하여 본인의 연구결과 또는 성과 · 업적 등으로 사용하는 행위 금지'를 명문화하고 있음(제7조)

    ※ 부득이하게 이전 결과를 사용할 경우 인용사실을 표시하거나 원문의 편집자 또는 발행자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음

- 우리나라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규정이 갖는 특징은 연구부정행위의 유형을 광범위하게 규정하기 보다는 책임있는 연구를 위해 지양되어야 할 행위들을 최소한도로 규정했다는 점임
  - 이를테면 연구비 유용의 경우, 명백한 부정행위이지만 연구의 진실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연구부정행위에 포함시키지 않음

- 연구부정행위의 범주는 미국보다는 유럽형에 더욱 가깝다고 할 수 있음[10)]
  - 특히, 연구내용 및 결과에 전혀 과학기술적 기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자로 등재하거나(명예저자 문제), 기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자에서 아예 제외하는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를 연구부정행위의 한 유형으로 포함시킨 것은 각종 설문조사 결과와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해 볼 때 우리나라 학계에서 근절되어야 할 심각한 연구활동으로 논문저자에 관한 사항을 지적하였기 때문임

2) 미국

- 세계 최초로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체계적인 대응을 시작한 미국은, 본인의 연구활동에서의 진실성 확보는 물론, 이를 통해 다른 연구자들의 연구활동을 오도하거나 피해를 주지 않는 "책임있는 연구행위"를 강조함[11)]
  - 책임성과의 연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위조(날조, Fabrication), 변조(Falsification), 표절(plagiarism)만을 연구부정행위로 정의하고 있음

-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개념 정의 과정을 살펴보면,
  - 국립보건원(NIH)의 '연구비 지원 및 계약에 대한 지침(1986년)에서는 FFP 외에도 '과학자 집단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정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를 연구부정행위에 포함시킴. 그러나, 미 과학아카데미(NAS)와 공학아카데미(NAE) 등에서 너무 모호하다는 의견이 대두됨

10) 송성수, "연구윤리란 무엇인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2011., p. 41.
11) 과학기술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 2007. p. 32.

- 미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OSTP)의 가이드라인인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연방정책(2000)'에서는 FFP로 한정함. 이후 ORI, NSF를 비롯한 모든 미국 연방기구에서 이 기준을 따르게 됨

미국 연구진실성국(Office of Research Integrity, ORI)[12]이 규정하고 있는 연구부정행위란 "연구를 계획, 수행 혹은 심사 또는 연구 결과 보고에 있어 위조, 변조, 표절 행위"로써 그 각각의 의미는 다음과 같음

-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하며, 과학적 연구 자료의 날조는 존재하지 않는 기록을 의도적으로 창조하는 것으로 근거가 없고 판단을 그르치게 하고 속이기 위한 것이 목적임
- "변조"는 연구 재료 · 장비 ·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함. 다시 말하면 변조는 과학연구를 시행하여 얻은 연구 자료를 선택적으로 변경하거나 연구 자료의 통계 분석에서 불확실한 것을 그릇되게 설명하는 것을 말하고, 또한 과학적 혹은 통계학적 검증 없이 일치하지 않는 연구 자료를 선택적으로 생략/삭제/은폐하는 것을 말함
-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함

12) 미국의 연구진실성국은 책임있는 연구수행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장려하고 부정행위의 빈도와 발생원인, 예방책에 대한 연구를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3) 유럽

- 연구부정행위의 적발, 처벌을 넘어서, 정직하고 합리적이며 자율적인 연구풍토의 조성을 이상향으로 간주함으로써 “바람직한 과학연구의 실천(good scientific practice)”을 강조함

- 미국과 달리 연구부정(research misconduct)과 연구부정직(research dishonesty)을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음

- 연구부정행위에는 저자표시나 타인과의 공동연구에 관련된 문제들이 포함되는 등 미국에 비해 연구부정행위의 범위가 보다 포괄적임

독일

- 74개 기초연구기관을 관할하는 막스프랑크연구협회(MPG)와 15개 공공연구기관을 관할하는 헬름홀츠연구협회(HGF)는 연구부정행위를 다음과 같이 비교적 폭넓게 규정하고 있음
  - 데이터의 위조 및 변조
  - 지원서, 연구자금 신청 및 논문발표 상 허위정보 기재
  - 지적 소유권 침해
    - 허가 없이 논문을 표절하거나 저자의 명의만을 바꾸어 발표하는 행위
    - 아디이어 도용(발표되지 않은 남의 연구를 허가없이 이용)
    - 저작권 소유자의 허가 없이 출판
  - 타인의 연구 방해 및 실험 과정 · 결과물에 대한 상해 또는 조작 행위

영국

- 영국은 2009년에 개정된 "좋은 연구활동의 규제에 관한 정책과 행동 규정(Research Council UK Policy and Code of Conduct on the Governance of Good Research Conduct)의 section 2 "좋은 연구활동 규정(Good Research Conduct Code)"에서 허용되지 않는 연구 행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음[13)]

13) Research Councils UK, RCUK Policy and Code of Conduct on the Governance of Good Research Conduct, Integrity, Clarity and Good Management, 2011. section2.

- 위조(날조, fabrication) : 거짓 데이터의 생산, 자료와 연구자 동의와 같은 연구의 다른 측면에서 거짓을 보고하는 것
- 변조(falsification) : 데이터의 부적절한 조작, 데이터나 이미지의 부적절한 선택 등
- 표절(plagiarism) : 타인의 아이디어, 지적 재산이나 업적을 출처를 밝히지 않고 또는 허락을 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일반적으로 도용하는 것
- 데이터의 오보(관련된 결과 또는 데이터를 알고서도 무모하거나 또는 완전히 부주의하여 억제하거나 데이터를 결함 있게 해석하여 제시하는 것) 및 출판을 위한 원고의 중복투고 등
- 연구수행 중 고의 또는 부주의한 일탈 행위
- 사람 및 척추동물 등에 대한 위험 방지 규정 위반
- 다른 사람들과 연구부정행위를 조장, 공모, 은폐

북유럽

- 덴마크는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국가 차원의 연구윤리 관련 제도를 정비하였으며, 뒤이어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도 마련함. 부정행위(misconduct)대신 부정직성(dishonesty)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연구부정행위를 상당히 넓게 정의하는 것이 특징임
  - 덴마크, 스웨덴 : FFP, 부당한 공로 배분, 타인의 연구 성과를 왜곡, 잘못된 저자 표시, 연구비 신청 시 지원기관 담당자를 속이는 행위 등
  - 핀란드 : • 사기(fraud) : FFP 등
    • 부정행위(misconduct) : 부적절한 논문저자 표시, 연구수행에 있어서 부주의, 중복 출판 등
  - 노르웨이 : 일반적인 윤리적 과학행위로부터 심각하게 일탈한 행위

- 과학연구행위 자체보다는 그 행위의 배경이 되는 잘못된 연구관행을 도덕적으로 성찰해 보려는 노력이 강함[14)]

14) 이현복 · 이찬미, "연구윤리에 대한 국내외 규정과 제도 비교", 한국윤리학회, 「윤리연구」, 제72호(2010).

4) 일본

- 1,481개의 학회가 등록되어 있는 일본학술회의는 동경대 다이라 교수 사건을 계기로 2006년 4월「과학자의 행동규범」을 제정하였는데, 연구부정행위를 미국과 마찬가지로 FFP에 한정하고 있음

- 연구부정행위의 방지뿐만아니라 과학자의 책임과 행동에 관련된 일반 행동규범 조항과 법령의 준수, 연구대상의 보호, 차별의 배제, 그리고 이익상반의 회피 등 연구자의 행동규범에 대하여 규정함

5) 종합

- 국가마다 연구부정행위의 정의가 다른 이유는 연구부정행위의 정의가 그 나라의 진실성 검증 체계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임
  - 국가 중심의 R&D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집행해 온 미국은 연구부정행위 처리 과정에 대해 조사 절차와 원칙, 연구기관과 정부 기관의 역할을 연방 규정을 통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연구부정행위에 대해서도 엄격하고 구체적인 정의를 두고 있음
  - 그러나, 과학연구에서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고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려는 유럽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학계의 자율적 판단과 처리를 중시하므로 엄격한 정의를 두지 않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음[15)]

-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미국과 유럽 간 관점의 차이는 〈표 2〉와 같음[16)]

- 미국과 일본, 유럽 및 우리나라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개념과 범위는 〈표 3〉과 같음[17)]

15) 박기범, "연구부정행위",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2011, p.147.
16) 권기석, "국내외 연구윤리 동향 및 관련 제도 소개,"대한화학회 연구윤리 심포지엄 발표 자료(2007. 10. 19)
17) 권기석, "국내외 연구윤리 동향 및 관련 제도 소개," 대한화학회 연구윤리 심포지엄 발표 자료(2007. 10. 19)

〈표 2〉 미국과 유럽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관점의 차이

- 미국 – Responsible Conduct of Research (RCR)
  - 다른 연구자들의 연구활동에 피해를 주지않는 책임있는 연구활동 강조
  - 책임성과의 연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위조, 변조, 표절만을 연구부정행위(Research Misconduct)로 정의
  - 검증시스템이 체계적이며, 정부 및 법원도 개입하기도 함

  ＊명확한 책임성 구분의 필요성은 사법체계를 통한 문제해결이 발달한 미국의 공판중심주의의 산물(의도성 여부를 가리는 것이 핵심)
- 유럽 – Good(Desirable) Scientific Practice (GSP)
  - 정직하고 합리적이며 자율적인, 이상적인 연구풍토 조성을 이상향으로 여기며 바람직한 연구활동 실천을 강조
  - 미국에 비해 연구부정행위 범위가 넓고 포괄적임
  - 반면, 검증체계는 미국에 비해 느슨한 형태

＊ OECD 과학부정행위 방지 워크샵(2006. 2. 일본 동경)에서 미국측 참석자들은 유럽의 연구윤리 확립 노력이 구체적이지 않고 추상적임을 지적하여 양측간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함.
그러나 연구부정행위 범위 및 검증제도는 해당 국가의 연구 환경, 문화, 가치관의 산물임

〈표 3〉 세계 각국의 연구부정행위 유형[18)]

유형	주요내용	미, 일	유럽	한국
연구진설성 저해	위조, 변조, 표절	○	○	○
출판부정행위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중복출판(북유럽), 분할 출판(Salami-slicing) 등		○	○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
데이터의 부적절한 처리 · 보관	기록 미비, 보관 부실, 중요데이터 파기(독), 부주의로 인한 오류(영, 북유럽), 데이터의 비공개 등		○	
연구주제상 부정행위	생명연구 윤리 위반(영), 빈약하거나 위험성이 있는 실험 기획 등		○	
연구관리 부정행위	연구비 착복(독), 논문심사자로서의 지위 남용, 허위정보 기재(독, 북유럽) 등		○	
개인적 부정행위	부적절한 처신, 부실한 학생지도, 타인의 연구방해(독), 부정행위 관여 · 방조(영, 독), 위조된 논문의 공동저자(독) 등		○	○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함, 조사를 방해)

※ 상기 내용은 정부나 주요 연구재단의 공식 윤리규정을 조사한 것으로서, 미 · 일 · 유럽의 많은 연구기관들은 자체규정에 FFP 보다 더욱 폭넓게 연구부정행위 유형을 정의하고 있음.
교육과학기술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도 연구기관이 필요할 경우 자체규정에 지침에서 제시하는 연구부정행위 외의 다른 내용을 추가할 수 있도록 규정(지침 4조 2항)

18) 과학기술부, 「실천연구윤리」, 2007, P.254.

나 연구부정행위의 발생원인

- 연구부정행위 발생의 일차적인 원인은 연구자 개인의 윤리의식 부재에서 찾을 수 있음
  - 무한경쟁시대에 남보다 더 많은 업적을 내야하고 그래야 승진이나 연구비 수혜 등에서 유리할 수 있음. 그런데 창의적인 연구에 필요한 시간과 고통스런 노력을 하지 않고도 쉽게 업적을 낼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이를테면 남의 것을 몰래 훔쳐와 내 것처럼 하고, 하나의 논문을 가지고 여러 개로 쪼개거나 이중게재를 할 수 있다면), 더욱이 표절을 포함한 연구부정행위를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발달되어 있지 않고, 더 나아가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처벌도 그리 무섭지 않다면 불편함보다는 편안함을 더 선호하는 이기적인 속성을 가진 인간으로서 유혹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임
  - 종종 연구부정행위는 연구자의 의도적인 선택이라기보다는 무엇이 좋은 연구이고 잘못된 연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또는 실수로 인하여 발생할 수도 있지만, 상당 부분은 연구자의 의도적인 잘못된 연구의 선택에서 비롯됨. 이는 바로 보다 쉽게 자신의 업적을 내고 인정받으려는 연구자의 비양심적이고 비윤리적인 태도와 관련됨. 그러므로 연구자 스스로의 높은 연구윤리 의식을 높이는 것은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는 데 필수적임

- 다음으로 연구부정행위는 연구자가 처한 연구 환경이나 잘못된 관행 그리고 제도적 요인과도 관련되어 있음
  - 잘못된 제도 · 환경적 요인이 연구부정행위의 토양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임. 수단보다는 결과를 중시하는 풍토, 연구자의 업적을 지나치게 연구의 양적 실적에 비중을 두는 정책, 우리 사회에 만연된 연구윤리 불감증과 '침묵의 카르텔' 또는 지나친 온정주의가 학문연구와 창작 활동상의 공정한 경쟁과 그에 따른 각 분야의 눈부신 발전을 가로 막고 있음
  - 제도적 요인으로는 전문성이 부족한 연구과제 기획 · 선정 시스템이 있을 수 있으며, 환경적 요인은 연구비 수주 경쟁의 심화, 성과주의의 강조 등을 꼽을 수 있음. 특히 연구시스템의 거대화와 복잡화로 인해 연구자 개인의 윤리의식이 집단의 분위기에 동화 · 희석되면서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무감각해지거나 자기합리화를 나타낼 수 있는데, 이러한 경향은 연구자들이 연구제도 · 환경이 불합리하고 불공정하다고 생각할 때 크게 증가될 수 있음

제2장

연구부정행위 검증의 주요개념

1. 적용대상 및 검증주체 | 30

2. 검증시효 및 검증원칙 | 35

3. 검증기간 및 검증기구 | 38

4. 제보자와 피조사자 | 42

제2장 연구부정행위 검증의 주요 개념

1. 적용대상 및 검증주체

가 적용대상

- 우리 정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대표적 관련 규정인 교육부(구. 교육과학기술부) 훈령(「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과 미래창조과학부령(「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으로 이원화되어 적용대상을 달리하며, 일부는 이중으로 규정하고 있다.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은 2011년「학술진흥법」과 동 시행령에 연구윤리 관련 조항이 포함됨에 따라 이를 위임할 행정규칙의 필요성 때문에, 기존 교육과학기술부 훈령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학술진흥법」이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게 되었음
  - ◆ 지침 제2조의 적용대상에는 교육부 사업 이외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일부(특정연구개발사업, 우주개발사업 등)를 포함하고 있음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은 2013년 행정체제 개편으로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창조과학부")가 출범하면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기능이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부터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됨에 따라 새로운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제정되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의 위임을 받게 되었음
  - ◆ 위임법령인 공동관리규정 제2조에 따른 적용대상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두 규정 간 연구부정행위 검증과 절차는 대동소이하여 어떤 규칙을 적용할 지에 따른 혼란의 여지는 없다고 할 수 있으나 조사위원회 외부 구성 비율 등 두 규정 간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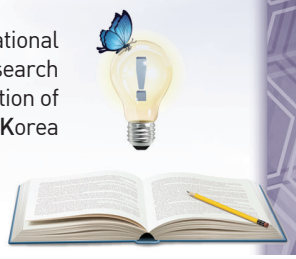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과학기술부 훈령[19])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 · 관리하거나 수행하는 대학 및 연구기관, 학술단체 등의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 「학술진흥법」 제15조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① 이 지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대학 및 연구기관, 학술단체(이하 "연구기관 등"이라 한다) 및 연구자와 이를 지원하고 관리 · 감독하는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기초연구사업 및 제14조에 따른 특정연구개발사업
2. 「우주개발진흥법」 제6조의2에 따른 우주개발사업
3. 「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법」 제8조에 따른 핵융합에너지연구개발사업
4. 「원자력진흥법」 제12조에 따른 원자력연구개발사업
5. 「과학기술기본법」 제17조에 따른 협동연구개발사업 및 제18조에 따른 과학기술협력사업
6. 「학술진흥법」 제5조에 따른 학술지원사업
7. 그 밖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분야

② 제1항의 사업 이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제9조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자체규정을 마련하고자 할 경우 이 지침을 준용할 수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미래창조과학부 부령)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5.14〉

1.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과제를 특정하여 그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공공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19) 2013년 11월 현재 정부조직개편(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분리)을 반영한 지침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2012년 8월 개정본에 따라 설명됨

나 검증주체

1) 연구기관 자체검증 원칙

-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는 연구기관의 자체 검증 원칙에 따라 문제가 된 연구과제를 수행한 기관이 검증 주체가 됨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서는 부정행위 검증의 주체를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의 소속 기관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
  - ※ '연구기관'이라 함은 공동관리 규정 제2조에 정의된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등을 포함하며 중앙행정기관과 계약에 의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의미
  - ※ '소속 기관'은 해당 연구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기관을 의미하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과 관련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연구기관'과 같은 의미임

- 덴마크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연구부정행위의 검증은 연구기관이 담당하고 이 결과를 연구비 지원기관이 심사하는 원칙을 채택하고 있음

2) 특수 사항

연구수행기간 중에 소속기관을 옮겼을 경우

- 연구자가 정부의 연구비 지원을 받아 연구를 수행하는 도중에 소속기관을 옮겼을 경우, 문제가 되는 연구행위가 정확히 어디에서 수행되었는지를 밝히기가 곤란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부분의 연구부정행위가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논문이나 보고서 등 최종 연구결과물이므로 최종 연구결과 발표 시점의 소속 연구기관이 검증주체가되는 것이 합리적임

둘 이상의 연구기관이 참여한 연구

- 둘 이상의 연구기관이 참여한 연구에서는 각각의 기관이 소속 연구자에 대해 별도의 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필요한 중복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기관이 협의를 거쳐 공동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검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참여 기관 모두가 동일하게 부담함

-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등으로 연구수행 비중이 기관마다 다른 경우, 공동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검증책임의 부담은 연구수행 비중에 따라 관련 기관사이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 질 수 있음

학위논문 등

- 특정 연구기관에 재직 중인 연구자가 이전의 소속 기관에서 수행한 석 · 박사학위 논문 혹은 교내 학술연구 등 정부의 직접적 지원이 없는 연구의 수행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한 경우, 해당 연구가 수행된 시점의 소속 기관이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책임이 있음

전문기관이 검증을 대행하는 경우

-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책임은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의 소속 기관에 있으나 기관이 내부 사정에 의해 직접 조사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구비 지원기관 등 상위기관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음

- 연구기관이 전문기관의 장에게 대신 검증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
  - 해당 연구기관의 규모가 작아 검증 전문가 확보 등 자체조사 역량이 충분히 않아 자체조사가 곤란한 경우
  -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 2개 이상의 연구기관 등이 참여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13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책임주체)

①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책임은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의 소속 기관에 있다.

② 연구기관 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전문기관에 직접 조사를 실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전문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검증 전문가 확보가 어려워 자체조사가 곤란한 경우
2.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3. 2개 이상의 연구기관 등이 참여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미래창조과학부 부령)

제7조(연구부정행위 검증절차 및 기간) ① 제5조제3호에 따른 검증절차는 예비조사, 본조사,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에 대한 결과통보로 이루어진다. 다만, 검증기관(검증주체인 전문기관 또는 연구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예비조사 과정에서 조사대상자가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하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② 제5조제3호에 따른 검증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검증기관의 장은 그 기간 내에 검증을 완료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검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검증시효 및 검증원칙

가 검증시효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과학기술부 훈령)은 2011년 개정을 통해 시효에 관한 규정이 삭제됨으로써 검증시효는 없음

- 과거 훈령에서는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였는데 새로운 훈령에서는 이러한 시효 규정이 삭제되었으므로 과거 모든 연구에서의 부정행위가 검증 대상이 됨
  ※ 2013년 8월 제정된 미래창조과학부 부령에서도 시효에 대한 언급이 없음

- 검증시효 5년 조항이 삭제되어 연구윤리업무를 담당하는 현장에서는 많은 애로가 예상되지만 연구윤리에는 시효가 있을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임. 다만 예전에 발생한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와 처벌은 당시의 기준으로 판단하면 크게 무리가 없음

- 그러나 최초 교육과학기술부 훈령에 근거하여 각 대학과 연구기관이 자체적으로 규정한 내부 규정의 경우 이러한 시효 규정이 여전히 남아있는 경우도 상당수 있으며 이 경우 혼선이 있을 수 있음

- 원칙상 정부 지원에 의한 연구에서는 시효 없이 과거 모든 연구가 검증 대상이 되지만, 학위논문 등 연구기관이 자체적으로 수행한 연구에서는 대학 자체의 규정 개정이 없었을 경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 여전히 시효가 적용되므로 검증 대상이 되지 못함

검증시효와 징계시효의 관계

- ‘검증시효’와 ‘징계시효’를 정확히 구분할 필요성이 있음
- ‘검증시효’란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만 진실성 검증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전의 지침에는 5년이었음
- ‘징계시효’란 교원에 대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만 징계의결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것으로 법인 정관이나 학칙에 규정되어 있음
  - 예를 들어 현 시점(2012년)에서 만 4년전인 2008년에 게재된 논문에서 연구부정행위가 뒤늦게 발견된 경우, 연구부정행위 검증 대상이 되지만 ‘징계시효’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음
  - 이때 징계시효의 기산이 되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을 연구가 수행된 시점이나 논문이 게재된 날로 보아야 할지, 그렇지 않으면 연구부정행위로 최종 판정이 내려진 날로 보아야 할지는 법률적 해석이 다를 수 있음
  - 국내 여러 대학에서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을 논문이 게재된 날로 보아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이에 반해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난 날로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하고 징계가 가능하다는 견해도 존재함
- 징계시효에 관한 이러한 법률적 쟁점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점은 ‘검증시효’란 ‘징계시효’와 별개 개념으로서 징계를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진실성 검증’은 반드시 하여야 한다는 점임
  - 이는 연구진실성 검증의 목적이 대상자를 징계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연구의 진실성을 가리는 것이며 이러한 목적은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기 때문임
- 따라서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수행된 연구의 진실성은 기간과 관계없이 모두 검증하여야 하고, 학위논문 또는 대학 자체 연구의 진실성은 대학 자체 규정에 따라 시효를 적용하여야 하며 ‘검증’과 ‘징계’는 별도로 진행되어야 함

나 검증원칙

- 부정행위에 대한 혐의를 입증할 책임은 연구기관과 조사위원회에 있음
  - 피조사자가 본인의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위원회가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하여야 함

- 조사와 처분의 권한을 가진 조사기구가 입증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연구의 특성상 조사위원회 등 외부의 제3자가 피조사자의 협조 없이 수행 연구의 상세한 정황을 알기는 매우 어려움

- 이에 따라, 연구윤리에 관한 교육과학기술부 훈령이나 미래창조과학부 부령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입증은[20] '증거 우위의 원칙(preponderance of evidence)'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권고됨
  - '증거 우위의 원칙'은 영미 사법체계의 용어로, 의심의 여지가 없는 확실한 증거를 요구하는 형사사건에 비해, 민사사건에서는 양쪽의 상반되는 주장 중 조금이라도 더 신빙성을 가지는 증거를 채택토록 하는 원칙임
  - 이 원칙은 증거에 대한 고도의 확신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조사기관의 입증책임이 훨씬 완화된 것이고 상대적으로 피조사자에게는 불리하다고 할 수 있음

- 증거 우위의 원칙 하에서 피조사자가 조사기관의 의혹 제기에 대해 반대 증거를 제시하지 않을 경우 이는 의혹이 있음을 입증하는 증거로 채택될 수도 있음
  - 이와 유사하게 민사소송법에서는 "당사자가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제349조)", "당사자가 상대방의 사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제출의무가 있는 문서를 훼손하여 버리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게 한 때에는 법원은 그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제350조)"라고 규정하고 있음

20) 영미법 체계에서는 입증 기준으로 1)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입증(proof beyond a reasonable doubt), 2)분명하고 확신할 만한 증거(clear and convincing evidence), 3)증거의 우위(preponderance of evidence) 등 세 가지를 제시함(박기범,"연구부정행위",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2011, p.167.)

3. 검증기간 및 검증기구

가 검증기간

- 예비조사를 포함하여 최종 조사의 완결, 조사 결과의 통보는 모두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함. 일반적으로 예비조사는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제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하므로(연구윤리 지침 제16조, 예비조사), 전체적인 검증기간은 신고접수일로부터 최대 7개월이며, 이 범위 내에서 연구기관은 자율적으로 조사기간을 정할 수 있음

- 실제 조사과정에서는 여러 다양한 이슈에 의해 6개월 이내에 모든 절차를 마치기 어려운 경우가 자주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적절한 조치를 통해 연장할 수 있음

- 예비조사는 제보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착수, 예비조사 완료 후 10일 이내 통보 등도 규정하고 있으나, 제보자의 사정 등에 의해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음
  - 통보는 문서로 전달함을 의미하며 통보 후 수신 확인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나, 제보자가 연락이 되지 않거나 확인요청에 불응할 경우에는 이후 절차로 진행하여도 무방함

〈그림 1〉 전체 검증기간[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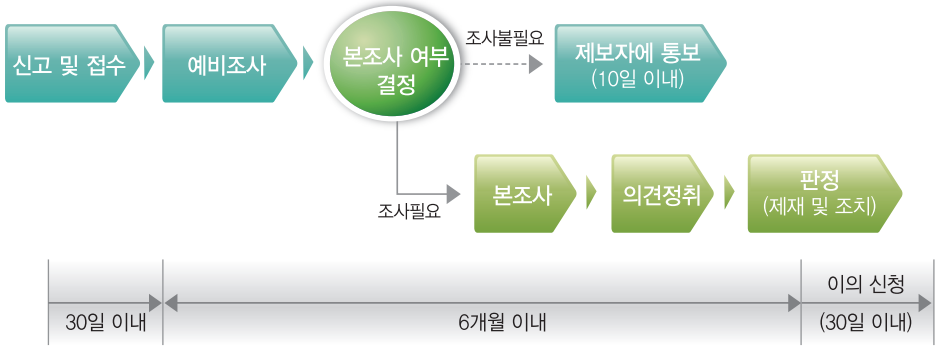

21) 과학기술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 2007, p70.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16조(예비조사)

① 예비조사는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하여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로, 제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한다.

제21조(판정)

②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기관은 제보사실 이관 기관,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나 검증기구

- 예비조사의 경우 별도의 구성 원칙을 정하지 않고 기관의 자율에 맡기고 있으나,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며 본조사는 외부인과 해당 연구분야 전문가가 포함된 '조사위원회' 형태의 구성을 원칙으로 함(교육과학기술부 연구윤리지침, 제9조)

- 조사위원회의 독립성은 공정한 조사를 위한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서, 조사 과정에서 연구기관의 장 등 외부로부터의 간섭과 지시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더블어서 중간과정의 보고 등도 이루어져서는 안 됨

- 조사위원회는 사안에 대한 조사, 관계인에 대한 출석과 의견 진술의 요구, 자료 제출 요구 등의 권한을 지니며 필요한 경우, 실험실에 대한 출입 통제와 증거 확보를 위한 강제 조치 등을 취할 수 있으나, 이러한 조치는 대부분의 연구부정행위 유형 조사에서는 불필요하며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조사위원과 피조사자와의 이해관계 상충(Conflict of Interests) 가능성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및 미래창조과학부령은 민법상 친인척 관계, 사제 관계, 공동연구자 관계 등으로 따로 명시하고 있으나 국내의 협소한 전문가 풀을 감안하면 '해당 연구분야 전문가'의 이해상충 관계를 완전 해소하기는 거의 불가능함
  - 관련 연구와 연구자의 진실성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은 대개 같은 학과의 동료교수이며, 국내 여건상 '기관 외부인'이 더 공정성을 담보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음
  - 따라서 이해관계 상충을 회피하기보다는 적절한 관리가 더욱 중요하며 이를 위해 제보자에게 반드시 기피신청 기회를 부여하고 조사과정에서 조사위원의 발언과 의견을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필요함

- 해당 대학의 교원 등 기관 내부소속 조사위원에게 금전적 인센티브 지급은 일부 특수대학을 제외하고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조사위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는 개별 대학이 결정할 문제임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18조(조사위원회 구성 등)

① 해당 기관의 장은 본조사를 위해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관의 실정과 연구부정행위의 규모 · 범위 등을 고려하여 다른 형태의 검증기구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위원회 또는 검증기구를 구성할 때에는 해당 연구분야의 전문가 및 해당 기관 소속이 아닌 외부인이 다음 각 호와 같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구 분야 전문가 50% 이상
2. 해당 기관 소속이 아닌 외부인 30% 이상

제19조(조사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조사위원이 될 수 없다.

1.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
2.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사제관계에 있거나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거나 하였던 자
3. 기타 조사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② 해당기관의 장은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제18조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정당한 사유로 조사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단, 제보자의 사정에 의해 연락을 취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이 경우 관련 내용을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③ 조사위원이 조사대상 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미래창조과학부 부령)

제10조(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권한)

① 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 전문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사위원회의 위원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1. 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인척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와 사제(師弟)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그 밖에 조사대상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등 조사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③ 검증기관의 장은 본조사에 착수하기 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회 위원의 명단을 알려야 한다. 다만, 제보자의 사정으로 연락을 취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하되 그 내용을 조사결과보고서에 적어야 한다.

④ 검증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제보자가 조사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한 경우 그 신청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을 철회하고 다른 사람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조사과정에서 조사위원회 위원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조사대상자, 증인 및 참고인에게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조사위원회는 조사 관련자에게 연구부정행위의 검증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검증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실험실 출입제한 및 관련 자료의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⑦ 조사위원회는 조사대상인 연구부정행위가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⑧ 조사위원회는 조사 결과 연구부정행위가 사실인 것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관련자에 대한 적절한 제재조치를 검증기관의 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4. 제보자와 피조사자

가 제보자

1) 제보자의 정의

- 제보자는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하여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해당 연구기관 등 또는 교육부, 전문기관에 알린 자를 말함

- 제보자는 반드시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른 자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필요는 없으며, 다른 당사자나 목격자로부터 부정행위 사실을 듣거나, 관련증거를 넘겨받아 대신 제보할 수 있음(자기관련성 또는 직접성의 불필요)

- 그러나 제보가 된 경우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원활한 진실성 검증을 위하여 조사위원회로부터 진술을 위한 출석이나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받을 경우, 이에 대해 성실히 응해야 할 책임이 있음

2) 제보자의 권리보호

-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는 의견진술, 이의제기, 변론기회와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함

- 제보자의 경우 제보에 의한 불이익 방지와 신원 보호 등을 따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원칙만으로 제보자 보호가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하기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음

- 일반적으로 제보자의 보호는 ① 제보자 신원에 대한 비밀 유지, ② 제보자에 대한 불이익이나 차별 방지, ③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은 제보자에 대한 원상회복 및 피해 보상의 3단계로 구성되는데, 연구부정행위 제보자는 '부패방지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직접적인 보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보호의 한계가 있음

- 한편, 학회나 학술지에서 연구부정행위를 확인한 경우, 인터넷, 언론을 통해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된 경우, 구체적인 제보자가 불명확할 경우, 위원회 등 개인이 아닌 단체가 제보한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음
  - 이 경우 결과의 통보, 의견진술 등은 '개인 제보자'를 가정하며 규정들을 유연하게 적용하여도 무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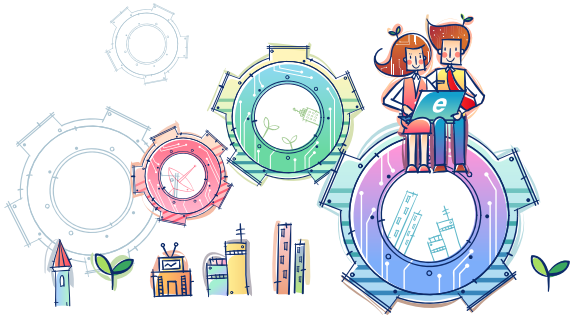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11조(제보자의 권리 보호)

① 제보자는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하여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해당 연구기관 등 또는 교육과학기술부, 전문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② 제보는 구술 · 서면 · 전화 ·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실명 제보를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 제보라 하더라도 연구과제명, 논문명,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받은 경우 연구기관 등 및 전문기관은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전문기관 및 연구기관 등의 장은 제보자가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했다는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④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⑤ 제보자가 제3항의 불이익 또는 차별을 받거나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될 경우 해당 기관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⑥ 제보자는 제보 접수기관 또는 조사기관에 연구부정행위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⑦ 제보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보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미래창조과학부 부령)

제13조(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의 권리 보호) 제5조제5호에 따른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검증기관은 검증과정에서 조사대상자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검증기관의 장은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했다는 이유로 제보자가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제보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 접수 및 조사 관련 사항은 조사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5조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
4. 조사대상자는 검증기관에 연구부정행위의 검증절차 및 일정 등을 알려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장은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5. 제보자는 제보 접수기관 또는 검증기관에 연구부정행위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나 피조사자

1) 피조사자의 정의

- 피조사자는 조사대상이 된 연구부정행위에 직 · 간접적으로 개입된 것으로 추정된 자를 말함. 따라서 부정행위를 직접 저지르거나 이에 적극적 · 소극적으로 가담한 자, 해당 연구에 참여자 또는 논문저자로 등록된 자, 해당 연구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부정행위 조사를 방해한 자, 부정행위 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혐의가 의심되는 사람 등은 피조사자에 포함됨

- 반면, 같은 연구실에 있어도 해당 연구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자는 일단 참고인 신분이 됨

2) 피조사자의 권리보호

- 피조사자는 조사의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되어야 하며, 명예나 권리가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의무가 조사기관에 있음

- 조사 시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동등'의 뜻은 동일한 횟수와 시간을 주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서로 상충되는 진술이 제시되었을 경우 어느 한쪽의 말만 참고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다른 쪽에게도 이 내용을 알리고 충분한 대응진술과 반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의미[22)]
  - 또한 피조사자의 변론이 필요한 경우 미리 조사일정을 고지하여 자료를 준비할 기회를 주어야 함

22) 자연적 정의(Natural Justice)의 한 원칙인 "쌍방청문원칙(누구든지 청문없이 불이익을 당한지 않는다. 쌍방이 청문되어야 한다)"을 반영하고 있음

〈표 4〉 사례를 통해 살펴본 피조사자의 기준[23]

구 분	역 할	조사시 지위	비 고
A교수	해당 연구의 책임자 (교신저자 등록)	피조사자	직접 위조를 지시 ·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연구와 직접 관련 있음
B교수	해당 연구 자문 (공동저자 등록)	피조사자	부정행위에 가담하지 않고 단순 자문만 하였더라도 공동저자로 등록된 이상 연구와 관련 있음
C교수	해당 연구 자문 (공동저자 미등록)	참고인	저자로 등록되지 않았으므로 직접 관련은 있지 않음
D대학원생	직접 위조를 수행함 (제1저자)	피조사자	당연히 피조사자임
E대학원생	위조를 도와줌 (공동저자 등록)	피조사자	소극적으로 마지못해 도와준 것일지라도 피조사자임
F대학원생	위조사실 인지 · 제보	제보자/증인	
G대학원생	D대학원생의 룸메이트 (연구에는 참여 안함)	참고인	매우 가까운 사이일지라도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 한 참고인
H대학원생	F대학원생으로부터 위조사실 인지하였으나 제보하지 않음 (연구에는 참여하지 않음)	증인	직접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한, 부정행위 방조를 가지고 이에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I대학원생	관련 연구에 참여하였으나 부정행위에 가담하지 않았으며 인지하지도 못함 (공동저자 등록)	피조사자	일단 연구와 관련 있는 자는 피조사자임
J보조원	조사가 시작되자 D대학원생의 요청에 따라 관련자료 파기 (연구에는 참여 안함)	피조사자	조사를 방해하는 등 연구부정에 간접적으로 가담

23) 과학기술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 2007, p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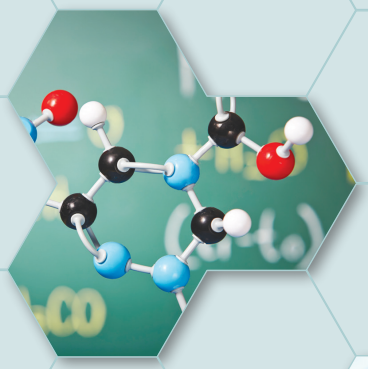

제3장

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

1. 제보접수 | 49

2. 예비조사 | 52

3. 본조사 | 61

4. 판정 | 75

5. 이의신청 | 76

6. 검증 시 유의사항 | 78

제3장 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

〈그림 2〉 연구진실성 검증 절차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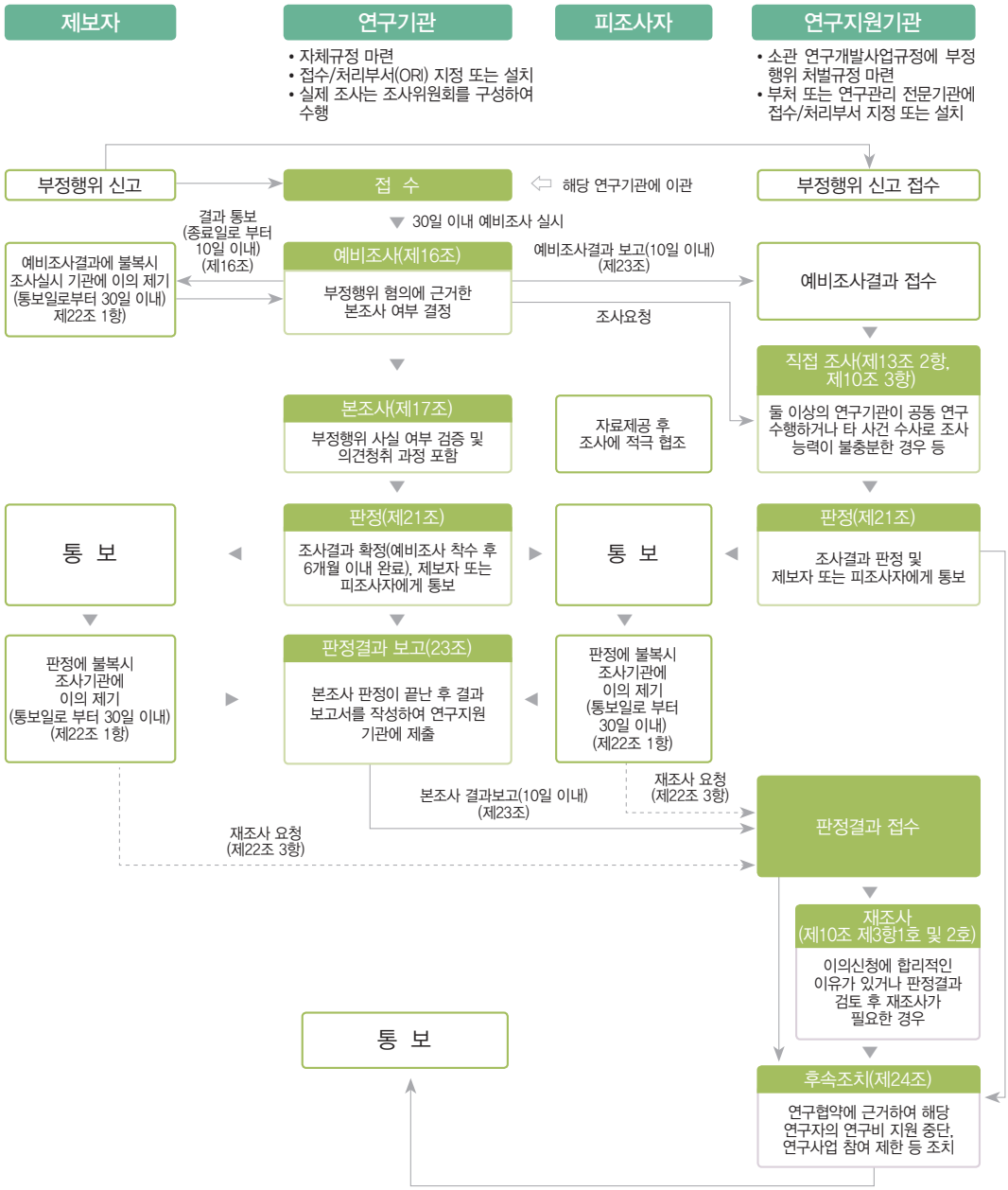

1. 제보접수

가 제보접수 창구

- 대학은 연구부정행위에 관한 제보 접수를 위한 공식적인 창구를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마련하여야 하며, 대학의 연구윤리 실무 담당자는 이 공식적인 창구를 통해 제보를 접수해야 함

- 연구부정행위 제보 접수에 대한 안내는 대학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는 것도 효과적임

- 연구부정행위 제보 접수를 위해 대학의 연구관련 부서(예, 연구처, 산학협력단)의 홈페이지에 접수창구를 개설한다면 제보자들이 쉽게 제보를 할 수 있음. 2012년 현재 연구부정행위 제보 접수를 위한 홈페이지를 개설한 대학의 비율은 32.6%로 다소 낮은 비율이지만 이는 2010년의 22.4%에 비교하면 향상된 비율로 매년 그 비율이 증대되고 있음[24)]

- 만일 연구부정행위 제보를 접수하기 위한 공식적인 창구가 마련되어 있지 않을 경우, 혼란을 줄이기 위해 가급적 연구부정행위 처리와 가장 근접한 부서(일반적으로 연구처 혹은 산학협력단)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담당자, 담당 내용 등 업무 조율이 필요함

24) 『연구윤리 활동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2012, 연구책임자 : 이인재.

실무자 유의사항

- 지침에 의하면 연구부정행위 제보는 구술 · 서면 · 전화 · 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실명으로 하도록 되어 있음. 단, 익명 제보라 하더라도 연구과제명, 논문명,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받은 경우 연구기관 등 및 전문기관은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음. 그러므로 실무자는 제보접수 창구에 제보가 들어왔을 때 이러한 제보의 요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한 후 접수를 받아야함

- 접수자가 제보를 받을 때, 제보 서식에 의거 제보자, 제보 일시, 제보 내용, 제보 방법, 관련 자료 등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록을 남겨야 함

- 제보자에게 추후의 연락 방법에 대해 미리 확인을 받아둘 필요가 있고, 제보자가 추후의 연락을 원하지 않을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미리 확인을 거치는 것이 필요함

- 접수자는 제보 후에 관련 자료를 연구진실성 검증을 위한 부서에 넘겨 이후의 절차를 수행해야 함

- 제보가 개인이 아닌 정부나 언론 기관일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각 기관의 세부 지침이 있어야 함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10조(연구부정행위 처리)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전문기관 및 연구기관 등의 장은 연구부정행위 제보 접수 창구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과학기술부 및 전문기관이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를 접수하였거나 그 발생 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내용을 이관하여 조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제보자의 권리 보호)

② 제보는 구술 · 서면 · 전화 · 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실명으로 하여야 한다. 단, 익명 제보라 하더라도 연구과제명, 논문명,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받은 경우 연구기관 등 및 전문기관은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미래창조과학부 부령)

제6조(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

① 제5조제2호에 따른 제보는 실명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야 한다. 다만, 연구과제명, 논문명,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제보받은 경우에는 익명제보도 포함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를 접수하거나 그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해당 제보내용이 연구기관에 관한 사항이면 해당 연구기관으로 이관하여 검증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예비조사

가 예비조사의 목적

- 예비조사는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해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이며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해야함. 각 기관의 연구진실성 위원회 규정에 15일 이내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음. 따라서 각 기관의 연구진실성 위원회 규정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음

- 예비조사가 모든 경우에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는 아니며, 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이 충분한 경우라면 생략하고 곧바로 본조사에 착수하여도 무방함

- 예비조사는 'inquiry', 즉 본조사 수행에 앞서 기초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로서의 의미와 'screening', 즉 본격적인 조사가 불필요한 단순 사례를 걸러내는 의미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음
  - 예비조사의 목적은 많은 행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본조사의 절차를 가능한 한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사실 관계의 확인이 명료하고 피조사자가 모든 혐의를 인정한 경우, 반대로 제보의 내용이 부정확하거나 의혹의 정도가 조사 또는 적절한 처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조사 없이 예비조사만으로도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것임

- 따라서, 다음의 경우는 모두 예비조사의 취지를 잘못 이해하고 적용한 사례임
  - 예비조사의 과정에서 사실상 본조사에 해당하는 조사를 대부분 수행하고 막상 본조사 단계에서는 예비조사의 결과를 검토하고 승인하거나,
  -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구별 없이 처음부터 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수행하거나,
  - 예비조사의 진행 과정에서 조사위원을 확충하여 본조사로 확대 수행하거나,
  - 아예 자체 규정에서 예비조사의 절차를 두지 않는 것 등

나 예비조사위원회의 구성

- 교육과학기술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의 제15조 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는 연구부정행위를 검증하고자 할 때 예비조사와 본조사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예비조사의 주체는 연구기관이 자율로 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음

- 예비조사위원회의 구성에는 외부인의 참여가 필수적이 아니므로 내부의 인사만으로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음

- 특히, 외부인의 참여가 필수적인 본조사와는 달리 예비조사의 절차는 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악용하여 외부인이 배제된 상태에서 예비조사를 상세히 진행하고 정작 본조사는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사례도 발견됨

- 따라서 예비조사는 최소한으로 수행하고 근거 없는 의혹이 아닌 경우는 모두 본조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예비조사의 결과는 반드시 제보자에게 통보되고, 아울러 연구비 지원기관에 보고되어야 함

실무자 유의사항

- 제보 접수 후 예비조사 단계에서 실무자들이 확인하고 준비해야 할 사항은 여러 가지가 있음

- 예비조사위원회의 조사를 위해 실무자는 제보 내용에 대해 기초 사실에 대해 확인하고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여야함

  - 첫째, 제보자의 이름, 제보 일시, 제보 내용(제보자가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피조사자의 이름과 소속 및 연구수행 당시의 소속 기관을 확인해야 함

- 둘째, 연구부정행위의 범주에 관한 것으로, 여기서 연구부정행위의 범주가 표절에 관한 사항일 경우는 제보된 텍스트, 논문, 보고서 등 관련된 기본 자료를 입수하여 제보 사항과 비교해 보는 것임
- 셋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했는지를 확인하여 연구지원기관에 보고 대상인지를 검토함
- 넷째, 제보된 사항이 고발이나 연구 중단 등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지의 여부도 확인함. 대체로 표절 등 단순 사례의 경우에는 즉각적인 조치에 해당하지 않으며, 즉각적인 조치는 제한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음을 유의해야 함

예비조사가 시작되었을 때 피조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함

예비조사 단계에서 필요시 피조사자를 대상으로 질의(Inquiry)를 실시할 수도 있고, 제보자에게 추가 자료 또는 설명을 요청할 수 있음

- 위조 및 변조의 경우,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하여 연구노트, 실험 자료(컴퓨터 파일, 사진, 실험 결과물 등)를 피조사자에게 요구할 수 있음
- 표절의 경우, 제보의 내용만으로는 객관적인 사실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생각될 때, 표절 의심 대상 저작물의 출판 일시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공저 단행본이나 논문일 경우, 각각의 역할 정도 등에 대해 피조사에게 이메일 혹은 서면으로 질문할 수 있음
- 아울러, 제보자에게도 제보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나 설명을 공문을 통해(간단하다면 전화나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요구할 수 있음. 이때 실무자들은 질의 일시와 내용, 질의 전달 방법, 그에 대한 답변, 제보자나 피조사자로부터 받은 설명이나 관련된 자료(공문, 이메일, 구두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확하게 기록을 남기고 보관해야 함

- 예비조사 결과를 작성하거나 또 본조사를 해야 할 경우, 모두 중요한 판단의 기초 자료가 되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잘 작성 및 분류한 후 서류철에 보관해야 하며, 이때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예비조사 단계에서 기초 사실 조사 서류철,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 대한 질의 응답에 관한 서류철 등을 각각 만들어 관리하는 것이 편리함

- 예비조사위원으로 참여하게 된 조사위원들은 예비조사 기간에 공정하고 성실하게 조사를 하며, 조사 중 또는 이후에도 조사를 통해 알게 된 어떤 내용에 대해서도 타당한 사유가 아니면 외부에 절대 노출하지 않겠다는 서약서(관련서식 2 참조)를 제출하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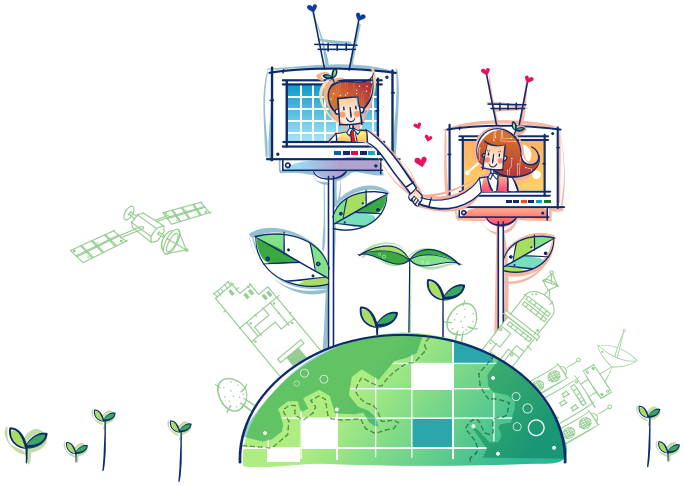

다 본조사 실시의 판단기준

- 본조사의 필요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때 아래의 기준을 참고함
  - 통상 기초 자료를 토대로, 제보가 부정행위 범주에 속하지 않거나, 문제의 정도가 미미하거나 단순 실수임이 명확할 경우 본조사는 불필요함
  - 피조사자가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한 때에는 본조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음
  - 기초 자료를 토대로, 본조사가 필요한 정도로 구체적인 의혹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예비 조사의 범위를 넘어 고도의 전문가의 평가 및 자문이 요청되는 사안일 경우, 예비조사 위원회의 최종 논의를 거쳐 본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해야 함

- 본조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할 때, 관련 회의 자료와 함께 그 타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함

- 흔히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해, 연구진실성 검증은 피조사자가 인정하지 않는 한, 예비조사 단계로 끝나기 보다는 본조사 단계까지 가는 경우가 많음
  - 위조 및 변조의 경우, 일반적으로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찾기 위해서는 해당 영역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연구노트의 확인 등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
  - 표절 및 중복게재의 경우, 일반적으로 학문영역의 독특한 특성과 표절이나 중복게재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쉽게 합의할 수 없고, 연구윤리 전문가나 해당 영역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
  - 부당한 논문저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저자들의 논문에서의 정확한 기여와 역할을 확인하는데 연구노트의 확인 등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

라 예비조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승인

- 본조사를 실시하여야 할 경우, 예비조사 결과보고서는 특별한 양식이 필요 없지만, 예비조사 단계에서 행한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으로 남겨야 하며, 이때 기록해야 할 주요 요소는 예비조사 일시, 장소, 예비조사 위원, 제보의 내용과 그에 대한 조사 내용 및 결정 내용, 판단의 근거 등이 포함되어야 함

- 예비조사 결과를 도출하고, 보고서를 작성한 후, 연구진실성위원회(또는 예비조사 결과 처리부서)에 그 결과를 보고함

- 예비조사결과의 승인이란 실무적인 절차를 의미하며 예비조사의 결과가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번복될 수는 없으며, 본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본조사를 실시함

마 예비조사 결과의 통보

- 연구진실성위원회(또는 예비조사 결과 처리부서)는 예비조사 결과를 승인하고 관련자(제보자, 피조사자, 연구지원기관)에게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함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15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

① 전문기관 및 연구기관 등의 장이 연구부정행위를 검증하고자 할 때에는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예비조사와 본조사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검증 절차 외에도 필요한 절차를 추가할 수 있다.

③ 해당 기관의 장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하였을 때에는 예비조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제16조(예비조사)

① 예비조사는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하여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로, 제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한다.예비조사기구의 형태는 해당 기관의 장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② 해당 기관의 장은 피조사자가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한 때에는 본조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③ 해당기관의 장은 증거자료에 대한 중대한 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위원회 구성 이전이라도 제20조제2항에 따른 증거자료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해당기관의 장은 예비조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예비조사 결과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단, 익명제보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미래창조과학부 부령)

제8조(예비조사)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예비조사(이하 "예비조사"라 한다)에서는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하여 같은 호에 따른 본조사(이하 "본조사"라 한다) 실시 여부를 결정하며, 예비조사 담당기구의 형태는 검증기관의 장이 결정한다.

② 제보에 따라 검증을 하는 경우에는 제보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예비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③ 검증기관의 장은 증거자료에 대한 중대한 훼손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회 구성 전이라도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증거자료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림 3〉 예비조사 절차도[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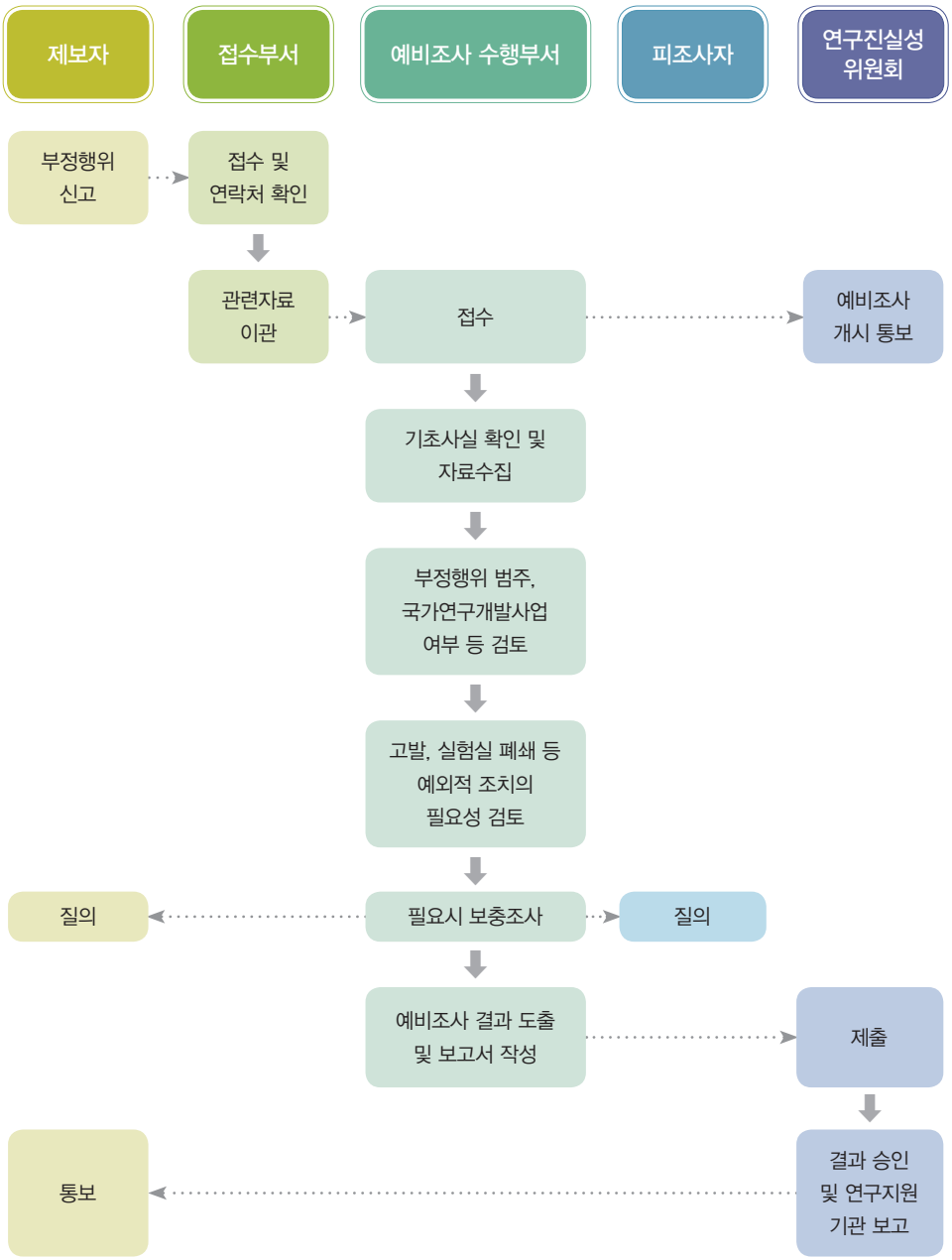

25) 박기범, "연구부정행위",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2011, p.161.

〈표 5〉 예비 조사에서의 주체별 역할[26]

제보 접수 부서

① 제보 접수자가 제보 내용, 제보자 등 관련 자료를 예비조사 담당자에게 이관
- 제보 접수 시점에서 접수자는 제보자에게 추후의 연락 방법에 대해 미리 확인을 받아둘 필요가 있다. 제보자가 추후의 연락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능하다면 미리 확인을 거치는 것이 필요

예비조사 수행 부서

② 기초 사실 여부 확인
- 표절의 경우 제보된 텍스트, 논문, 보고서 등 기본 자료 입수 및 비교

③ 부정행위 범주의 확인
- 시효 5년 경과 여부 (기관 내부 규정에 시효가 있을 경우에 해당)
- 피조사자의 소속과 연구수행 당시의 소속 기관 확인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여부를 확인하여 연구지원기관에 보고 대상인지 검토

④ 고발이나 연구 중단 등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의 확인
- 표절 등 단순 사례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즉각적인 조치는 제한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⑤ 필요 시 피조사자를 대상으로 질의(Inquiry) 실시
- 질의(Inquiry)는 Yes/No 등 본격적인 조사 시행 이전에 기초 자료의 수집 차원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연구기관의 검증 경험과 역량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굳이 예비조사 단계에서 실시할 필요가 없다.

⑥ 필요 시 제보자에게 추가 자료 또는 설명 요청

⑦ 기초 자료를 토대로 본조사가 필요한 정도로 구체적인 의혹이 있다고 판단되면 본조사의 실시를, 그렇지 않고 제보가 부정행위 범주에 속하지 않거나 정도가 미미하거나 단순 실수임이 명확할 경우 본조사 불필요 등 실시 여부의 결정

⑧ 예비조사 결과 보고서의 작성 및 연구진실성위원회(또는 예비조사 결과 처리부서)에 보고서를 통보
- 예비조사 결과 보고서는 본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특별한 양식이 필요 없으며 실시하지 않을 경우 제보의 내용과 판단의 근거를 상세히 기술해야함

연구진실성위원회(또는 예비조사 결과 처리부서)

⑨ 예비조사 결과의 승인 및 관련자(제보자, 피조사자, 연구지원기관)에 결과 통보
- 승인은 실무적인 절차를 의미하며 예비조사의 결과가 진실성위원회에서 번복될 수는 없음

⑩ 본조사 필요시 조사위원회의 구성

26) 박기범, "연구부정행위",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2011, p.162.

3. 본조사

가 본조사의 목적

- 본조사의 목적은 부정행위 사실 여부를 단순히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행위가 있었을 경우 그 의도, 행위의 심각성, 반복성 여부, 경위, 공동 연구자들의 역할 등 총체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임
  - 또한 부정의혹이 제기된 연구에 국한하지 않으며, 피조사자의 과거 연구에서의 유사한 부정행위 의혹도 규명하는 것이 필요함

- 연구부정행위는 단순히 '있었다/없었다'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해당 연구가 얼마나 부적절한 행위인지 그 정도의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함
  - 표면적으로 동일한 분량의 동일한 정도의 표절 행위라 하더라도 그 의도와 경위, 유사 연구에서의 반복성 등에 따라 부정행위의 심각성에 대한 판단은 크게 달라질 수 있음

- 구체적인 사실 여부에 관한 확인이 본조사의 1차적 목적이지만, 여기에 그치지 않고 고의성 여부, 의도, 반복성 여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
  - 미국 ORI는 연구부정행위의 판단 기준으로 알고 있었는지(knowingly), 의도가 있었는지(intentionally), 그리고 얼마나 무모하게(recklessly) 저질러졌는지를 조사하여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

- 특히, 반복성에 관한 검증은 국내의 조사 과정에서 소홀하게 다루어지고 있음
  - 선진국의 부정행위 사례연구에서는 공통적으로 한번 부정행위를 저지른 연구자는 이를 반복적으로 저지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하고 있음

◆ 미국 NSF의 경우 표절의 의혹이 제기되면 예비조사 단계에서 피조사자에게 1차 서면 질의를 보내는데 여기서 표절의 경우, 의혹이 제기된 연구뿐 아니라 과거 다른 연구에서의 사례에 대해서도 검증하고 있음

〈표 6〉 표절 의혹 사건에서의 NSF의 표준 질의 내용[27]

1. Did you copy material from any of these documents into your proposal? If not, for each document, please explain how the identical or substantially similar text in the document also appears in your NSF proposal.

   당신의 과제제안서/논문/보고서에 다음 문서의 내용을 일부라도 표절한 적이 있습니까? 만일 표절한 것이 아니라면 왜 똑같은 문장이 제안서/논문/보고서에 표현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2. If material was copied from any of these documents, why was it not properly cited or distinguished in some way from the material original to your proposal?

   만일 이들 문서의 문장을 똑같이 쓴 것이라면 왜 인용부호 또는 별도의 방법으로 인용되었음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3. Did you have permission to copy this material without citing the original source and without distinguishing the copied or closely paraphrased material? If so, please enclose a copy of any written permission or provide details of any oral permission.

   혹시 당신이 다음 문건들을 인용부호 없이도 정당하게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문건 또는 구두 허락의 증거를 제출하십시오.

27) NSF OIG Form 36 'Model Plagiarism Letter to Subject'의 번역. 박기범, "연구부정행위,"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2011.

4. If the language we have identified as copied appears to be copied because it is so constrained by its technical nature that it can only be described with this text, please provide copies of at least two sources other than your own publications that contain the same text as it appears in your proposal. Please highlight the relevant text.

   만일 문제의 표현이 당신의 연구 분야에서 매우 표준적인 것이어서 이러한 표현이 표절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문구라면 당신의 과거 다른 논문/보고서/제안서 중 같은 표현이 있는 적어도 두 개 이상의 문건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부분에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5. Is there any additional text in your proposal that was copied from another source but is not properly distinguished and attributed?

   문제의 논문/보고서/제안서 중에 혹시 문제의 표현 말고도 적절히 인용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까?

6. Is there material in any other proposals you have submitted to NSF that was copied from another source but not properly distinguished and attributed?

   과거 NSF에 제출된 논문/보고서/제안서 중 적절히 인용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까?

나 본조사위원회의 구성

- 연구진실성위원회(또는 관련 부서)는 예비조사 결과 본조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면 본조사를 위한 준비를 하고 시행해야 함

- 본조사 단계에서 실무자가 확인하고 준비해야 할 중요한 사항으로는 우선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아래의 사항에 따라 구성해야 함
  - 본조사 위원회를 구성해야하는데 본조사 위원회의 구성은 연구윤리지침에서 규정한 대로, 위원장 1인 포함, 5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해당 연구분야의 전문가 50% 이상 및 해당 기관 소속이 아닌 외부인이 30% 이상 되도록 함
  - 본조사위원을 구성할 때, 실무자는 위촉하고자 하는 조사위원이 조사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지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야 함. 즉, 조사위원이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친 · 인척 관계인지, 사제관계에 있는지, 공동연구에 참여하고 있거나 한 적이 있는 지 등에 대해 면밀하게 파악하여야 하고, 만일 이러한 사유에 해당될 때는 조사위원에서 제외해야 함. 또한 조사위원이 조사 대상 과제와 이해관계가 있을 때 스스로 조사위원을 기피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도 필요함.
  - 일반적으로 외부 인사 최소 2명을 포함하여 내 · 외부 인사 6~7명 정도로 본조사 위원회 구성가능 함
  - 관련 규정에 따라 본조사 위원회를 구성하되,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 및 판정을 위해 연구윤리 전문가로서 연구진실성 검증의 경험이 풍부한 인사를 위원장으로 선임하여야 함
  - 대학이나 각 기관에서는 위촉하고자 하는 조사위원이 조사위원으로서 전문성을 가지고 성실하게 참여할 수 있는 인사로 구성하고자 하지만, 동료 교수의 문제를 평가해야 하는 부담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점 등을 들어 참여를 고사하는 경우가 많아 위원 구성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어야 함. 이를테면, 연구윤리에 대해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교내외 인사를 2~3년 주기로 상설 조사위원으로 임명하고 이에 대한 수업 감면이나 적절한 수당 지급, 혹은 교수 업적 평가에서 봉사 점수에서 가산점 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만 함

- 본조사위원의 구성이 확정되면, 그 명단을 제보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만일 제보자가 정당한 사유로 조사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 조사위원을 교체하고 다시 통보해야 함. 만일 제보자가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정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반영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최종 보고서에는 관련 기록을 남겨 놓아야 함. 또한 제보자의 사정에 의해 연락을 취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경우 관련 내용을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함
- 조사위원에 대한 기피, 제척, 회피 등에 대한 절차가 마무리 되면 본조사가 언제 시작되며, 어떤 일정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하여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통보해야 함. 뿐만 아니라, 조사위원이 최종 확정되면 이를 조사위원에게도 통보하면서 조사위원의 역할과 권한, 의무, 향후 일정 등을 포함시켜야 함
- 통상 첫 본조사위원회 모임을 가질 때 조사위원에 대한 임명장(위촉장)을 수여하며, 본조사위원으로 참여하게 된 조사위원들은 "본조사 기간에 공정하고 성실하게 조사를 하며, 조사 중 또는 이후에도 조사를 통해 알게 된 어떤 내용에 대해서도 타당한 사유가 아니면 외부에 절대 노출하지 않겠다"는 서약서(관련서식 2)를 제출하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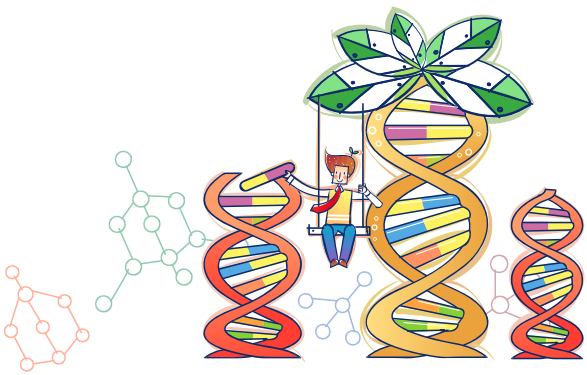

다 본조사 과정

- 본조사는 제보된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본격적으로 검증하는 단계로서, 이 과정에서 해당 연구실 통제, 피조사자 소환 등 권리침해적 요소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사수행에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 본조사 과정을 보다 자세히 구분하자면,
  - 제보자 · 피조사자 · 증인 · 참고인과의 면담 및 자료검토 등 본격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조사단계
  - 조사내용 및 중간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및 변론단계
  - 이의제기 및 변론내용을 검토하여 판정을 위한 최종 조사결과를 도출하는 단계 등 3단계로 구분할 수 있음

〈그림 4〉 본조사 과정[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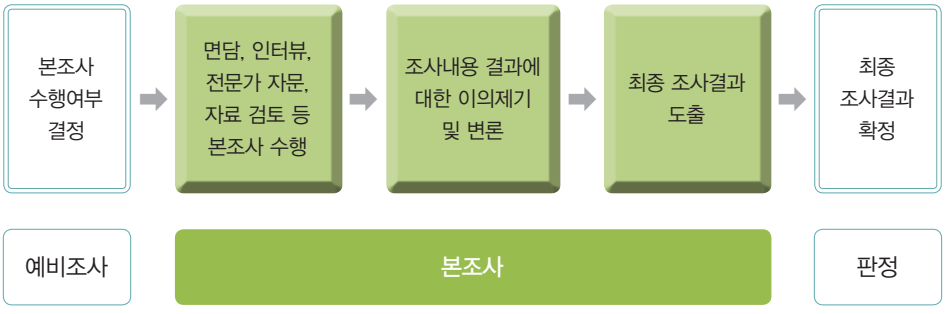

28) 과학기술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 2007, p.80.

라 본조사위원회의 권한

- 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게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함

-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해당 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실험실 출입 제한 및 관련 자료의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조사위원회는 해당기관의 장에게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음

- 예비조사의 종료 이후 본조사의 표준적인 절차를 구성하면 다음과 같음

〈그림 5〉 본조사 표준 절차도[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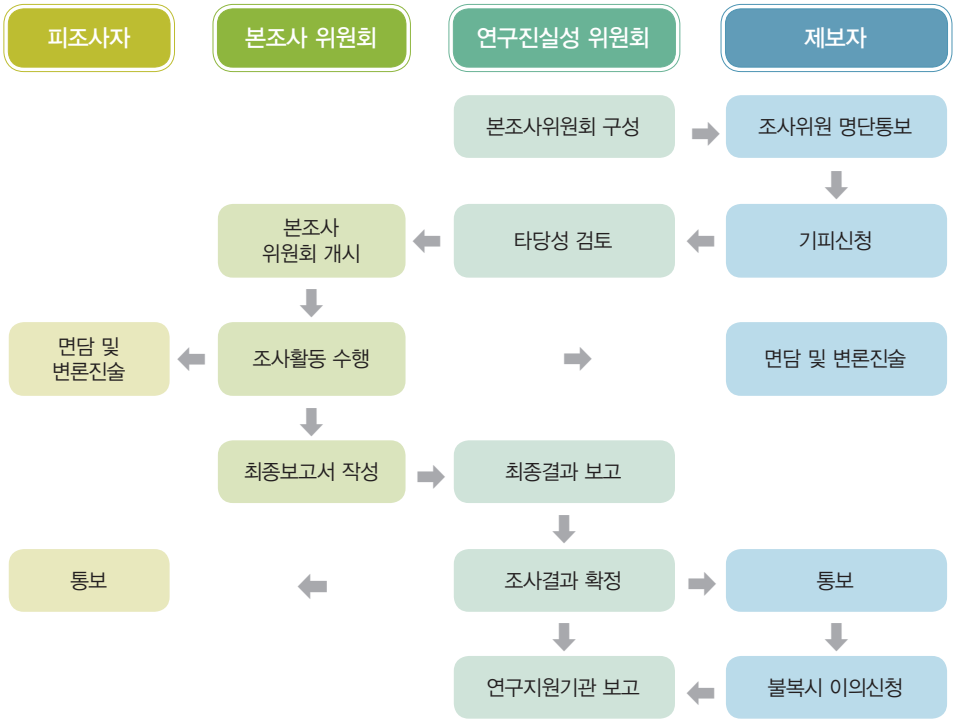

29) 박기범, "연구부정행위,"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2011, p.164.

〈표 7〉 본조사과정에서의 주체별 역할[30)]

연구진실성위원회(또는 관련 부서)

① 본조사 위원회 구성
- 외부인, 연구 분야 전문가 등 관련 규정 준수

② 본조사위원 명단을 제보자에게 통보하고 이의 접수
- 제보자의 특수한 사정으로 연락이 곤란할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③ 접수된 이의의 타당성과 반영 여부 검토
- 이의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조사위원을 교체하고 다시 통보하며 만일 제보자가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정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반영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최종보고서에 관련 기록을 남겨야 한다.

④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조사의 개시를 통보

본조사위원회

⑤ 본조사 활동 수행
- 기초 자료의 수집, 검토, 면담, 질의, 증인, 참고인 조사 등 일체의 조사 과정 수행
-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변론의 기회는 반드시 보장하여야 한다.

⑥ 결론의 도출 및 최종보고서 작성
- 최종보고서에는 1) 제보 내용, 2) 조사위원회의 조사 대상 부정행위 목록, 3) 조사 진행 경과, 4) 예비조사의 결과, 5) 관련 증거나 증인 진술, 6)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변론 또는 의견진술 내용과 이에 대한 조사위원회의 판단, 7) 부정행위에 대한 최종 결론과 각 당사자의 해당 행위에서의 역할, 8) 부정행위의 심각성이나 반복성, 의도성에 대한 조사위원회의 판단과 이에 기반을 두어 후속조치의 적절한 수위에 대한 건의, 9) 조사 과정에서의 문제점이나 한계, 또는 건의 사항, 10) 조사위원의 명단 등이 최소한 담겨 있어야 함
- 조사위원간 판단이 엇갈리는 경우, 미리 규정된 의결 원칙에 따라 결론을 도출

⑦ 최종보고서를 연구진실성위원회에 제출

연구진실성위원회

⑧ 최종보고서의 승인 및 제보자, 피조사자, 연구지원기관 등 관련자에게 결과 통보 및 보고

30) 박기범, "연구부정행위",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이해와 실천』, 2011, p.165.

본조사 과정에서의 실무자 유의사항

- 본조사를 위한 조사위원회 구성 등 본조사 준비가 마무리되면 본격적으로 본조사 활동에 들어가며, 본조사의 목적은 부정행위 사실 여부에 대한 확인 뿐 아니라 부정행위가 있었을 경우 그 의도, 행위의 심각성, 반복성 여부, 경위, 공동 연구자들의 역할까지를 모두 파악하는 것으로 단순히 위조나 변조, 표절이 있었는지 사실 관계의 확인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연구자의 의도나 경위, 그리고 엇갈리는 증언 사이에서 연구자 간의 역할 관계까지도 파악하여야 함

- 본조사의 과정은 부정행위 유형에 따라 천차만별이고, 특히 복잡한 사안의 경우 수차례의 회의와 면담, 질의, 변론 등이 반복될 수도 있어 표준적인 절차를 제시하기가 쉽지 않음
  - 본조사위원회에서는 규정의 해석, 절차의 진행 등에서 신중을 기해야하며, 수차례 회의를 통해 각 사안에 대해 충분히 논의한 후 결정을 해야 함. 특히, 연구진실성 검증의 경험이 없는 경우, 유사한 연구부정행위 사례에 대해 연구진실성 검증을 실시한 대학이나 기관이 있는지를 찾아 처리 절차나 쟁점이 되었던 것들에 대해 자문을 구하는 것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검증을 위해 유익함
  - 위조 및 변조의 경우, 일반적으로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찾기 위해서는 해당 영역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연구노트의 자료를 자세히 확인해야하는 등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함. 이에 피조사자만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여 부정행위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참고인 혹은 증인을 조사하여 증거를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음
  - 부당한 논문저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저자들이 논문에서 정확히 어떤 기여와 역할을 하였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며, 이를 위해서는 연구노트의 확인, 이메일 등을 통한 연구논문 작성과정에서 기여 등을 확인해야 함

- 본조사 활동은 본조사위원회의 위원장 주재 하에 본조사 기간 중에 무리 없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실무자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조사 기간 내에 관련 규정을 준수하면서 쟁점 사항이 충분히 논의되어 타당한 결론에 이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본조사위원회의 위원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릴 경우에 대비하여 미리 판단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은 의견의 일치를 보기 쉬우나 부정행위의 심각성에 대한 판단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과반 이상 출석에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 등 규정을 미리 정해두어야 조사 과정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음

- 본격적인 본조사 활동이 이루어지면서 조사위원회의 최종 결론이 나올 때까지의 주요 활동 내용을 순서대로 정리해 보면 〈표 8〉과 같음

〈표 8〉 본조사 주요활동 및 실무자 유의사항

조사 활동의 순서(절차)	주요 조사 및 검토 활동	실무자 유의 사항
예비조사결과 보고서 검토	– 제보 내용의 검토 (제보자, 제보 내용, 예비조사 결과 보고서 검토 및 요구 사항)	– 예비조사 결과 보고서를 각 조사위원에게 제시 – 예비조사 과정에서의 주요 쟁점 및 본조사에서의 요구 사항 등
관련된 자료의 검토	– 제보자의 요구 사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토대로 집중 검토(총 OO개의 조사 사항이 있는 경우 조사위원 간 역할 분담하여 자료 검토) – 조사위원별로 각 사안에 대한 의견 및 근거 제시 – 각 사안에 대하여 위원 간 이견이나 쟁점의 파악 및 조율 – 제보자나 피조사자를 대상으로 확인해야 할 내용 정리	– 각 조사위원들이 조사 활동 중 요구하는 제반 내용에 대하여 관련 자료나 정보 제공 – 각 위원들 간 검토 의견서 수합 및 정리(회의가 불가능할 경우, 이메일로 의견을 수렴한 후 종합하여 위원들 전체로부터 피드백 받음) – 주요 쟁점에 대하여 위원들 간 논의 되었던 내용을 회의록에 기록함 – 피조사자가 소명해야 할 내용 정리 및 공문으로 서면 소명서 제출 의뢰
피조사자 면담 및 변론 진술 (필요시 서면 소명서로 대체)	– 약 10일 동안 서면 소명 자료를 검토한 후, 위원별 검토 의견을 조사위원장에게 제출 – 위원장의 주재 하에 각 위원별 검토 의견을 종합하여, 최종(안)을 채택	– 조사위원에게 서면 소명 자료 조사를 위한 일시, 장소 공지 및 회의록 작성 – 피조사자와의 면담이 요청될 경우, 질문 내용을 확정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고, 이를 녹음함. 면담 시, 제보자와 피조사자가 서로 만나지 않도록 면담 시간과 동선을 계획하고, 동등하게 발언의 기회를 부여
본조사 결론(안) 도출	– 피조사자 서면 소명서를 검토한 결과를 포함하여 지금까지의 조사에서 나온 쟁점 논의사항을 바탕으로 본조사 결과 종합 판정(안)과 그 근거 작성	– 회의록 작성 * 조사위원 간 판단이 엇갈리는 경우, 미리 규정된 의결 원칙에 따라 결론을 도출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본조사 결론(안) 송부 및 이의 신청 접수	–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이를 송부하고, 이의 신청과 변론 내용을 받음	– 제보자, 피조사자에게 본조사 결론(안)을 공문으로 송부하고, 이의 신청을 받음(이의 신청 기간, 방법 등을 명시하여 함)
본조사 결과보고서 최종안 확정	예시) 교재 〈0000과 xxxx〉은 타인 저서들을 활용하면서도 그에 대한 인용표시나 참고문헌을 밝히지 않고 있고, 아무리 수험서의 성격을 띤다고 해도 특정인의 책을 너무 많이 인용하면서도 참고문헌에 기록하지 않음으로써 연구부정행위 중 표절에 해당됨. 재적 위원 7명 중 7명이 참석하여 출석 위원 중 5명이 연구부정행위 중 표절에 해당된다고 판정함	

마 최종보고서 작성

- 본조사 활동이 끝나면,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하며 최종보고서에 담아야 할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제보 내용
  - 조사위원회의 조사 대상 부정행위 목록
  - 조사 진행 경과
  - 예비조사의 결과
  - 관련 증거나 증인 진술
  -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변론 또는 의견진술 내용과 이에 대한 조사위원회의 판단
  - 부정행위에 대한 최종 결론과 각 당사자의 해당 행위에서의 역할
  - 부정행위의 심각성이나 반복성, 의도성에 대한 조사위원회의 판단과 이에 기반을 두어 후속조치의 적절한 수위에 대한 건의
  - 조사과정에서의 문제점이나 한계, 또는 건의 사항
  - 조사위원의 명단 등

〈표 9〉 최종보고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1. 제보의 내용 또는 의혹 인지 과정
   – 언제, 누구로부터, 어떻게 제보가 되었으며 최초 제보의 내용이 무엇인지?
   – 제보가 아닌 인지의 경우 어떤 과정을 통해 의혹이 인지되었으며, 의혹의 내용은 무엇인지?

2. 예비조사의 결과
   – 예비조사 수행 내역과 본조사 실시의 근거에 대해 간략히 설명
     ※ 예비조사가 실시되지 않았을 경우 생략

3. 조사 대상 부정행위 목록
   – 조사위원회의 조사는 제보 내용 뿐 아니라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사실도 모두 포함하며, 하나의 사례가 여러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본조사 위원회에서 조사한 부정행위를 목록으로 제시함

4. 조사 진행 경과
   – 제보 혹은 인지 이후 예비조사, 연구진실성위원회, 본조사위원회 등 개최 경과
   – 본조사위원회 활동에 대해서는 구체적 활동 내용(면담, 증인, 참고인 등)을 간략히 기술
   – 진행 경과는 추후 연구관리기관의 타당성 검토에서 연구기관의 조사 과정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됨
   – 제보자의 조사위원 제척에 관한 기록

5. 관련 증거나 증인 진술
   – 3항의 부정행위 목록에 따라 판단에 필요한 관련 증거와 증인의 진술 기록

6.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의견진술 내용과 조사위원회의 판단
   – 부정행위 의혹에 대해 당사자의 의견진술 내용을 정리하고 진술의 진실성에 대한 조사위원회의 판단 내용 기술
   –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았을 경우 이에 대한 설명

7. 판단에 필요한 참고인 진술 또는 추가 검토 내용

8. 부정행위에 대한 최종 결론
   - 각 목록별 부정행위에 대한 최종 결론과 함께 해당 행위에서 피조사자를 포함한 관련자들의 역할을 명시
   - 단순히 부정행위가 있었는지가 아니라 해당 행위가 어느 정도 심각한 행위인지, 반복적으로 발생하였는지, 부정행위의 목적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 조사위원회의 판단을 기술

9. 후속조치에 대한 건의
   - 부정행위의 심각성에 기반하여 적절한 후속 조치를 연구기관장, 연구진실성위원회, 인사위원회 등 관련자에게 건의
   - 후속조치는 가장 가벼운 경고로부터 인사 징계에까지 폭이 매우 넓지만 징계의 수위는 별도의 절차를 밟는 것이 타당하며 조사위원회는 논문의 철회, 각서, 연구 제한, 학내 활동 제한, 추후 연구에서의 정밀 심사 등 연구 진실성과의 관련성이 높은 조치를 중심으로 건의

10. 조사과정의 이슈
    - 조사위원회 활동의 한계,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또는 개선사항, 건의사항 등을 간략히 기술

11. 조사위원의 명단 및 서명 날인

4. 판정

- 판정은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및 변론 과정을 거쳐 연구부정행위혐의의 사실 여부 등 조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여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는 것을 말함

-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하여야 함.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기관은 제보사실 이관 기관,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조사위원회의 판단 결과가 최종적으로 확정되어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알림으로써 검증 절차가 완료됨

-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연구진실성위원회, 기관장 등 다른 주체가 확정하는 과정에서 조사위원회의 결과가 바뀌어서는 안 됨

5. 이의신청

-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판정 이후 제보자나 피조사자가 조사의 결과에 승복하지 않아 재조사를 요청할 경우에 관한 규정은 기관마다 조금씩 달리하고 있음
  - 일부 기관은 이의신청과 재조사 절차를 규정한 반면, 조사기관에서의 재조사에 관한 규정이 없는 기관도 다수 있음
  - 연구비 지원기관이 명확한 경우에는 연구비 지원기관에 이의를 신청하고 지원기관이 재조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나, 학위논문 등에서는 다시 연구기관에 이의를 신청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대한 규정이 명확치 않음
  - 현실적으로도 신분상의 불리함과 불안감을 갖고 있는 제보자의 입장에서 볼 때, 본인의 제보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판정 결과에 대해 다시 해당 기관에 재조사를 요청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며 실제 효과도 매우 의심스러움

- 개정된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에 의하면(제 22조 이의신청)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예비조사 결과 또는 판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를 실시한 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조사를 실시한 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함
  -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이의신청과는 별도로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당해 건에 대하여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음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22조(이의신청 등)

①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예비조사 결과 또는 판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를 실시한 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조사를 실시한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이의신청과는 별도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당해 건에 대하여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미래창조과학부 부령)

제12조(이의신청)

① 제5조제4호에 따른 이의신청은 제11조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증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

② 검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6. 검증 시 유의사항

가 검증 과정에서의 실무자 체크리스트

◆ 연구부정행위 접수부터 조사 및 후속 조치에 이르기까지 연구진실성 검증 과정 전반에 대하여 실무자들이 각 검증 절차(단계)별로 체크하고 확인해야 할 사항을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표 10〉 실무자 체크사항

연구부정행위 처리절차	주요 내용	실무자의 행정적 검토 사항
연구부정행위 제보	– 구술, 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실명으로 제보 – 익명제보라도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가 포함된 증거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받은 경우, 실명제보에 준하여 처리	– 제보는 제보 요건을 갖추고 실명으로 하였는가? (제보자,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증빙 자료의 유무 등) – 익명제보일 경우, 실명제보에 준하는 요건을 갖고 있는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받은 경우) – 제보자가 개인이 아닌 국가나 다른 기관, 언론 등일 때 어떻게 하는가? – 제보자에게 추후 연락할 방법에 대해 알고 있는가?
예비조사	– 기초 사실 여부 확인 – 부정행위 범주의 확인 – 고발이나 연구 중단 등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의 확인 – 필요시 피조사자를 대상으로 질의(Inquiry) 실시 – 필요시 제보자에게 추가 자료 또는 설명 요청 – 본조사의 필요 여부결정 – 예비조사 결과 보고서 작성 및 연구진실성위원회(또는 예비조사 결과 처리 부서)에 보고서를 통보	– 기초 사실 여부 확인은 표절의 경우 제보된 텍스트, 논문, 보고서 등 기본 자료 입수 및 비교, 위조 · 변조의 경우는 연구노트 등 확보 – 피조사자의 소속과 연구수행 당시의 소속 기관 확인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여부를 확인하여 연구지원기관에 보고 대상인지 검토 – 표절 등 단순 사례의 경우에는 즉각적인 조치에 해당하지 않으며, 즉각적인 조치는 위조의 경우 제한적으로 적용하여야 함 – 질의(Inquiry)할 내용은 무엇인가? 이 단계에서 질의가 본격적인 조사 시행 이전에 기초 자료의 수집 차원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타당한가? – 기초 자료를 토대로 본조사가 필요한 정도로 구체적인 의혹이 있다고 판단되면 본조사의 실시를, 그렇지 않고 제보가 부정행위 범주에 속하지 않거나 정도가 미미하거나 단순 실수임이 명확할 경우 본조사 불필요 등 실시 여부의 결정 – 예비조사 결과 보고서는 본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특별한 양식이 필요 없으며, 실시하지 않을 경우 제보의 내용과 판단의 근거를 상세히 기술하여야 함

본조사	**연구진실성위원회** **(또는 관련 부서)** – 본조사 위원회 구성 – 본조사위원 명단을 제보자에게 통보하고 이의 접수 – 접수된 이의의 타당성과 반영 여부 검토 –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조사의 개시를 통보 **본조사위원회** – 본조사 활동 수행 – 결론의 도출 및 최종보고서 작성 – 최종보고서를 연구진실성위원회에 제출 **연구진실성위원회** – 최종보고서의 승인 및 제보자, 피조사자, 연구지원기관 등 관련자에게 결과 통보	– 검증 책임 기관으로서 검증을 위한 준비와 능력은 있는가? 외부 기관에 의뢰해야할 상황은 아닌가? – 본조사위원회의 구성을 위한 대책은 있는가? 본조사위원회는 구성 요건에 부합하게 외부인 연구 분야 전문가로 구성되었는가? – 본조사위원의 명단을 제보자에게 통보하고 이의를 접수하고, 이의가 타당할 때 조사위원을 교체하였는가? 이에 대하여 최종 보고서에 기록을 남겼는가? –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조사의 개시를 통보하였는가? – 본조사 활동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는가?(기초 자료의 수집, 검토, 면담 질의, 증인, 참고인 조사 등) – 조사위원회는 제보자, 피조사자를 모두 보호할 수 있는 검증 절차를 가지고 있으며, 검증 절차마다 동등하게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가? – 본조사위원은 공정하게 검증하고, 비밀을 보장할 수 있다는 서약서를 작성했는가? –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은? – 검증이 진행되는 과정동안 비밀 유지 방안? – 피조사자가 검증 절차나 일정 등에 대해 어떻게 알려줄 것인가? – 제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기관 차원의 구체적인 방안은? (허위 제보자 제외) – 제보자에게 검증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어떻게 알려줄 것인가? – 결론 도출 과정은 문제가 없는가? – 최종보고서의 작성 시 포함되어야 할 요소가 빠짐없이 들어갔는가? (윤문, 검토 확인을 마쳤는가?, 조사위원간 판단이 엇갈리는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가?) – 최종보고서를 연구진실성위원회에 어떻게 제출하는가? – 최종보고서의 승인 절차는? – 최종보고서의 내용을 제보자, 피조사자, 연구지원 기관 등에 어떻게 통보하는가?
기타 사후 처리	이의 제기에 대한 대응	

나 검증과정에서의 법률적 이슈

1) 조사위원회 위원의 법률적 책임

- 연구진실성 검증 시스템은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결과에 대한 행정적 처리를 수반하고 있어 진실성 검증 시스템과 관련하여 법률적 이슈들이 제기될 수 있음
  - 소속기관으로부터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를 받은 연구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례, 저자배분과 관련한 논란이 명예훼손 등 민사소송으로 이어진 사례, 위조 또는 변조를 둘러싼 사기죄 논란 등이 발생한 바 있음

- 연구부정행위 사건은 종종 민 · 형사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음
  - 민 · 형사 소송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가 재판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며 그 조사 결과가 충분한 "증거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개별 사례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대체로 법관은 조사위원회의 전문적인 판단에 대해 신뢰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조사위원회의 조사위원은 연구윤리검증의 관점에서 자신의 전문적인 지식과 견해에 기초하여 조사를 수행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므로 조사결과보고서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는 않음
  - 다만 조사보고서 자체가 고의적으로 허위로 작성되었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법적으로 처벌을 받거나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음

2) 조사 결과 공개와 명예훼손

- 미국은 부정행위 조사 결과를 매년 실명과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웹을 통해 완전 공개하여 일반 연구자들에게 연구윤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이러한 부정행위가 어떠한 절차를 거쳐 어떻게 처리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그러나 대다수의 국내 대학 관계자들은 진실성 검증 조사결과의 최종보고서 또는 이에 준하는 개인 정보를 공개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부정행위에 대한 정보 공개가 개인의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임

- 법률적으로 명예훼손은 진실한 사실이라 하더라도 널리 알려질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진다면 죄가 성립될 수 있음. 그러나 예외적으로 그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으며 연구진실성 검증 보고서는 이 예외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므로,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함

3) 조사자료 및 증거수집의 절차

- 연구윤리지침에서는 조사위원회의 권한으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해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해 해당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출입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그런데 이러한 행위를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실험실 출입 제한, 연구자료의 압수 및 보관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처분으로 법률적인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표절이나 중복게재의 경우 자료의 압수나 연구실 출입제한 등의 조치는 불필요하므로 조사위원회는 조사에 앞서 조치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

- 관계인에 대한 출석 요구, 피조사자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의 권한은 당사자와 조사의 책임 주체인 해당 기관과의 근로계약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음
  - 대부분의 경우 근로계약에는 소속인이 기관의 제규정을 준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연구부정행위 조사에 관한 규정도 마찬가지로 근로계약에 기준하여 준수하여야 함. 그러므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등이 조사기관에 소속되어 있을 경우에는 문제가 없으나 2개 이상의 기관이 연루되어 있을 경우 조사위원회의 실제 활동은 크게 제약될 수밖에 없음
  - 실제 사례들을 보아도 공동 저자 등 타 기관의 관계인에 대해서는 거의 조사가 수행될 수 없었으며 이에 대해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하기는 어려움
- 다만 지침에서는 진실성 검증의 원칙으로 피조사자가 조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훼손하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 이의 진실성을 입증할 책임이 피조사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해설서에서는 입증의 기준으로 증거 우위의 원칙을 준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 조사위원회는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에게 근로계약에 입각하여 조사에 협조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그 정황을 진실성을 판단함에 고려하면 될 것임
- 증거 수집의 절차에 있어서도 조사위원회는 기존의 법령에 위반되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연구부정행위 조사에서도 이미 잘 알려진 인권 원칙, 즉 불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대해서는 증거로서의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존중되는 것이 향후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음
  - 조사위원회는 '증거 우위의 원칙'에 입각하여 피조사자에게 조사의 협조를 요청해야 함

제4장

연구부정행위 검증 후속조치

1. 조사결과의 보고 | 84

2. 조사기록의 보관 및 정보의 공개 | 86

3. 징계 등의 후속조치 | 90

제4장 연구부정행위 검증 후속조치

1. 조사결과의 보고

- 전문기관 및 연구기관 등의 장은 예비조사 및 본조사를 실시한 경우 조사 종료 후 각각 10일 이내에 교육부 장관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이전의 지침에는 대상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은 연구결과물에 한정하였으나 2012년 8월에 개정된 지침에는 위 내용이 삭제되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지 않은 연구결과물에 대해서도 교육부 장관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1. 제보의 내용
  2. 조사결과
  3. 조사위원회의 위원 명단(본조사의 경우에 한함)
  4.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예비조사의 경우에 한함)
  5. 해당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 (본조사의 경우에 한함)
  6. 관련 증거 및 증인, 참고인 기타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본조사의 경우에 한함)
  7.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내용
  8. 검증결과에 따른 처분요구 결과(본조사의 경우에 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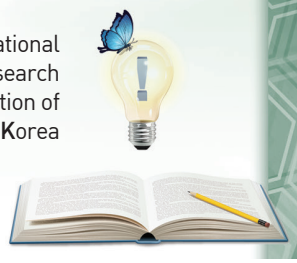

- 연구기관 등의 장은 조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견한 경우 즉시 교육부 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보고받은 교육부 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과 조사를 실시한 연구기관 등의 장은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1. 법령 또는 해당 규칙에 중대한 위반사항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기타 전문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 교육부 장관은 연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조사결과가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구과제의 협약해약, 참여제한 또는 사업비 환수, 연구부정행위자에 대한 징계 요구 등의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를 해당 기관에 통보함

- 교육부 장관은 연구기관이 제출한 보고서가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하여 추가조사 및 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경우 직접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2. 조사기록의 보관 및 정보의 공개

- 조사를 실시한 기관은 조사 과정의 모든 기록을 음성, 영상, 또는 문서의 형태로 반드시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기록이라 함은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은 사항이 포함됨

  1) 예비조사 · 본조사 · 판정에서의 각종 회의 내용
  2) 제보자 · 피조사자 · 참고인 · 증인과의 면담 내용
  3) 제보자 · 피조사자 · 참고인 · 증인 등이 제출한 자료 및 증거물
  4) 전화 · 이메일을 통한 인터뷰 내용
  5) 제보자 · 피조사자의 변론 및 이의신청 내용
  6) 전문가 검토 · 자문의견
  7) 예비조사 · 본조사 결과보고서

  ※ 지침 제 23조 1항에 따른 조사 결과 보고서는 10년 이상 보관 하여야 함

- 기록보전의 이유는 조사의 투명성 · 책임성 · 신뢰성 제고,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의 이의신청시 재조사 과정에서 활용, 연구윤리 교육 및 연구부정행위 예방 대책 수립시 활용, 검증사례의 공유를 통한 향후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체계적 대응, 연구부정행위의 현황 파악과 검증과정의 체계적인 축적을 통한 연구부정행위 유형 정립 및 효율적인 검증방법 도출에 유용하기 때문임

- 조사보고서 및 조사위원 명단은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음. 이는 조사 진행 과정 또는 판정 이전에 조사결과나 조사위원 명단이 외부에 공개될 경우 조사의 독립성과 자율성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임. 또한 조사결과보고서 공개 시에는 신원정보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 조사과정에 참여한 자(조사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전문가 등)의 명단 공개에 대해서는 연구기관의 자율적인 사항이나 일반적으로 조사위원 · 증인 · 참고인 · 자문에 참여한 전문가 등의 신원 정보는, 조사결과가 불리하게 나와 피해를 입은 측이 보복 등을 목적으로 알고자 할 경우가 높기 때문에 개별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

- 그러나 타 연구기관에서 진실성 검증을 위해 해당 사안의 전문가 정보 등을 요청할 경우에는 적극 협조할 수 있음

- 제보자의 신원정보는 반드시 비공개 사항임

- 조사과정에 대한 학술연구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정보의 비공개가 연구에 어느 정도 지장을 주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함
  - 예를 들어, 연구부정행위 조사위원회 구성의 특징에 관해 조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조사위원의 실명이 연구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는 아니므로 성별 · 나이와 직위 정도만 공개하여도 무방할 것임

- 증인, 참고인, 자문인의 악의적이거나 불합리한 진술로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한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명예훼손 고소 등을 제기하기 위하여 해당 진술을 한 자의 실명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요구내용의 합리성과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이런 곤란한 경우에 대한 가장 최선의 예방책은 변론 및 이의제기 단계에서 조사내용 및 결과를 당사자에게 충분히 알리고 상충되는 부분에 대한 검토를 충실히 진행하는 것이 좋음

- 피조사자의 경우도 혐의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관련 정보를 외부에 공개 하지 않음. 다만 아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관 내부, 연구지원기관 또는 상급기관, 관련 기관 및 언론 등에 공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1) 법령 또는 해당 규칙에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 위반사실 확인 후 사법당국, 경찰이나 관련기관에 즉시 알리도록 함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 관련기관 및 경찰에 즉시 알리고,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기관 내부 및 언론 등에 공개

  3) 기타 전문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23조(조사결과의 제출)

① 전문기관 및 연구기관 등의 장은 예비조사 및 본조사를 실시한 경우 조사 종료 후 각각 10일 이내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내용
2. 조사결과
3. 조사위원회의 위원 명단(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4.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예비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5. 해당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6. 관련 증거 및 증인, 참고인 기타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7.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내용
8. 검증결과에 따른 처분요구결과(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③ 연구기관 등의 장은 조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견한 경우 즉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보고받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과 조사를 실시한 연구기관 등의 장은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해당 규칙에 중대한 위반사항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기타 전문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24조(조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23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조사결과가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구과제의 협약해약, 참여제한 또는 사업비 환수, 연구부정행위자에 대한 징계 요구 등의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를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가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하여 추가조사 및 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경우 직접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5조(조사의 기록과 정보의 공개)

① 조사를 실시한 기관은 조사 과정의 모든 기록을 음성, 영상, 또는 문서의 형태로 반드시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교육과학기술부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해당 보고서를 10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② 조사보고서 및 조사위원 명단은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다.

③ 조사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은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3. 징계 등의 후속조치

- 판정을 통해 연구부정행위 검증의 절차는 마무리되며 연구부정행위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 등 기관 차원의 후속조치가 이루어지게 됨
  - 국가연구개발사업 같이 연구비 지원기관이 명확할 경우 조사결과를 지원기관에 보고하는 절차까지가 연구부정행위 처리의 과정에 포함됨
  - 연구부정행위 검증의 목적은 연구의 진실성에 대한 검증에 있으므로 조사위원회가 징계의 수위를 결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나, 해당 부정행위의 심각성 정도에 대해 전문적인 조사 결론을 알려주는 차원에서 징계의 수위를 건의하는 것은 무방함

- 후속조치는 정직, 해임, 파면 등 인사상의 조치 뿐 아니라, 해당 논문의 수정이나 철회, 향후 연구에서의 진실성 서약, 추가 연구의 제약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음

- 연구부정행위 판정 시 제재의 형태를 살펴보면, 사안별로 다양한 수위의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대학의 경우 위조, 변조,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 중 가장 심각한 사안에 대해서는 정직, 해임, 파면, 학위취소 등의 중징계 제재가 취해졌으나, 중복게재 (자료의 중복사용) 및 부당한 논문 저자 표기 등 다소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는 주의 · 경고 등 상대적으로 경징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음[29)]
  - 정부출연(연)의 경우 위조에 해당하는 연구부정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발생한 위조와 표절에 대해서는 정직, 해임, 파면 등의 중징계가, 중복게재 (자료의 중복사용) 및 부당한 논문 저자 표기 등의 사건에 대해서는 정직 및 주의 · 경고 등의 징계가 취해짐

29) 『연구윤리 활동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2013, 연구책임자 : 이인재.

〈표 11〉 연구부정행위 판정시 제재의 형태 – 대학

부정행위 유형 \ 징계수위	주의 · 경고	견책 · 감봉	정직	해임 · 파면	학위 취소	기타
위조	1	1	1	2	0	5
변조	1	1	0	3	1	4
표절	9	7	10	3	3	16
부당한 논문저자표시	8	2	0	2	1	4
자료의 중복사용, 중복게재	10	2	3	1	1	7
논문대필	1	2	0	0	1	4

※ 조사 대상 기간 : ~2012년까지

〈표 12〉 연구부정행위 판정시 제재의 형태 – 정부출연(연)

부정행위 유형 \ 징계수위	주의 · 경고	견책 · 감봉	정직	해임 · 파면	기타
위조	0	1	0	1	1
변조	1	1	0	1	0
표절	2	2	1	0	1
부당한 논문저자표시	3	0	0	0	0
자료의 중복사용, 중복게재	1	1	1	0	0
논문대필	0	1	0	0	0

※ 조사 대상 기간 : ~2012년까지

제5장

연구부정행위 사전 예방

1. 연구윤리 제도 및 인프라 확립 | 94

2. 연구윤리 교육 강화 | 97

3. 연구윤리 정보 제공 활성화 | 103

제5장 연구부정행위 사전 예방

1. 연구윤리 제도 및 인프라 확립

가 연구윤리준수 확인서

- 석 · 박사 학위 논문 제출시 논문 제출 대상자들에게 연구윤리준수확인서 제출을 요구하는 대학의 비율은 16.8%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32] 미실시 대학의 경우 86.5%가 그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변하여 향후 많은 대학이 석 · 박사 학위 논문 제출시 논문 제출 대상자들에게 연구윤리준수확인서 제출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됨

- 다음은 현재 Y대학에서 사용되고 있는 연구윤리준수 확인서 표준 양식이며, 단과대학별 연구내용에 따라 표준양식의 내용을 다소 변형하여 사용하고 있음

연구윤리준수 확인서

본인은 OO대학교 대학원생으로서 학위 논문 작성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연구윤리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첫째,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정직하고 엄정한 연구를 수행하여 학위논문을 작성한다.
둘째, 논문 작성시 위조, 변조, 표절, 자료의 중복사용, 논문 대필 등 학문적 진실성과 연구윤리를 훼손하는 어떠한 연구부정행위도 하지 않는다.

OOOO년 OO월 OO일

학위명 :
학과 :
지도교수 :
성명 : (서명)

OO대학교 대학원장 귀하

32) 이원용, "2010년 국내 연구윤리 활동 실태조사 · 분석", 한국연구재단보고서, 2010.

나 논문유사도 검색시스템

- 현재 대학에 많이 보급되어 상용화된 국외 표절검색시스템으로 'Turnitin'(www.turnitin.com)이 존재함
  - 2013년 10월 현재 21개 대학, 6개 연구기관이 활용하고 있음[33)]
  - Turnitin의 OriginalityCheck™ 은 SCI, SSCI, A&HCI등 국제학술지에 실린 논문의 유사도를 검색할 수 있는 민간부문의 상용화된 표절 검색시스템으로 전 세계 120억 web page와 10,000종의 학술저널, ebook 및 1996년부터 Turnitin을 통해 제출한 60만건의 학생 paper들과 실시간 비교하여, 논문 및 과제에 대한 표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로서 기계적으로 문장의 유사도 및 일치도를 제시하여 주고 있음
  - 이러한 수치를 절대적인 표절의 판단 기준으로 활용해서는 안되고 단순히 참고 사항으로 활용하여야 하며, 최종적인 표절에 대한 판단은 전문가의 검토를 거친 후 내려야 함

〈그림 6〉 Turnitin 표절검색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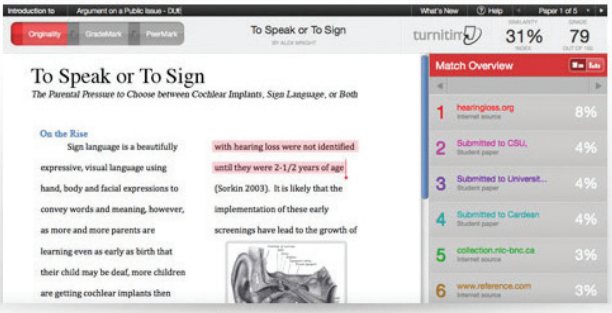

- 국내 표절검색시스템으로는 Copykiller, Scholar's Aid, DEVAC 등이 있음
- 표절검색시스템 도입을 통해 교수들과 학생 모두 연구윤리 인식 제고와 표절 예방 차원에서 도움이 되리라 기대됨

33) 한국대학신문(2013.10.22)

다 연구윤리 관련 규정집 및 가이드북

- 학부생, 대학원생, 교원을 위한 연구윤리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보급하는 활동은 연구부정행위 사전예방으로서 매우 효과적인 방법으로 기대되며, 일부 대학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음

- KAIST는 학부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연구윤리 가이드북을 제작 보급하고 있는데 가이드북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생명윤리위원회(IRB), 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 생물안전위원회(IBC)에 관한 소개, 주요 기능, 규정, 위원회에 제보 혹은 심의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소개하고 있음

- 가톨릭대학교는 대학생 학습윤리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보급하고 있음. 대학교 교양교육원에서 학생들의 바람직한 학습 태도를 제시하고자 〈학생윤리 가이드라인〉과 함께 학습윤리에 대해 안내하는 책자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2009년에 발행하였음

- 한동대학교 교육개발센터에서는 학습윤리의 목적, 학습공동체와 학습윤리, 개인적 사회적 차원에서의 학습윤리, 올바른 출처와 인용 등으로 구성된 학습윤리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보급하고 있음

- 서울대학교는 교원과 대학원생을 위해 연구관련 규정집을 2008년에 제작하여 보급하고 있음. 규정집은 대학교 교수윤리헌장, 윤리강령, 윤리규범, 대학교 연구윤리지침,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규정, 생명윤리심의위원회 규정, 생물안전위원회 규정,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 실험동물자원관리 규정 등의 연구윤리규정과 함께 연구비 및 간접경비 관리 관련 규정, 연구소 및 연구원 등 관련 규정, 산학협력 관련 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음

2. 연구윤리 교육 강화

가 기관 자체 교육 운영

- 연구윤리의 확립과 연구자의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서는 연구윤리에 관한 제도적 인프라 구축과 더불어 연구윤리의 교육이 필수적임

- 2012년에 실시한 연구윤리 활동실태조사 결과[34]에 따른 교육 실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연구윤리 관련 기관자체 교육 실시 여부에 대한 조사에서 대학의 경우는 63.7%가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정부 출연(연)은 대학보다 높은 86.2%가 실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연구윤리 교육 대상에 대한 조사에서 대학의 경우는 교원과 연구윤리 업무 대상자에 대해서는 97.6%와 82.3%의 비율로 매우 높았으나 대학원생과 학부생에 대해서는 69.9%와 39.8%로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반면 정부출연(연)의 경우는 전임연구원, 비전임 연구원, 연구담당 행정직원 모두에게 90%이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대학에 비교하여 비교적 교육이 잘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연구윤리 교육의 형태에 대한 조사에서 대학의 경우는 주로 특강과 홍보자료 배포 등의 방법을 가장 많이 활용하였으며, 정규과목과 온라인 교육의 실시는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반면 정부출연(연)의 경우는 온라인 교육의 실시가 특강과 홍보자료 배포 등의 방법과 유사한 빈도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연구윤리 확립을 위해 타당한 교육과정 편성 등 연구윤리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전제 하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주요 대학의 연구윤리 교육 과목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음

34) 『연구윤리 활동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2013, 연구책임자 : 이인재.

1) 서울대학교

- 서울대학교는 학부생의 경우, 연구윤리 또는 학습윤리에 대한 정규 과목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예비 입학생과 학부생을 대상으로 〈교수학습개발센터〉의 글쓰기 프로그램을 통해 표절과 인용에 대해 교육하는 등 글쓰기 강좌를 통해 올바른 인용과 표절 예방에 대해 가르치고 있음

- 이외에 연구윤리에 대한 특별 프로그램으로 2년에 한번 있는 "연구윤리 심포지엄"이 있으며, 심포지엄에서는 교수, 연구원,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연구윤리에 대한 특정 주제에 대해 주제 발표 및 토론으로 진행하면서 연구윤리에 대한 정보 제공과 인식의 확산을 도모하고 있음

- 대학원 과정의 연구윤리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주수	주제
1주	연구윤리 소개
2주	연구노트 작성
3주	연구 결과의 심사와 발표 관련 윤리
4주	표절 방지
5주	연구부정행위
6주	지적재산권
7주	대학원 연구생활 및 협동연구의 윤리
8주	동물 실험 윤리
9주	생물안전
10주	인간행동 연구윤리 및 개인정보 보호
11주	인간 대상 연구윤리 주요 주제
12주	취약한 피험자 연구 윤리
13주	S대학교 연구윤리 시스템 안내

- 서울대학교는 지금까지의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윤리 과목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2013년부터는 표준화된 연구윤리 교재를 만들어서(이를 위한 준비의 일환으로 2012년 5월에 대학원 연구윤리 강좌에 참여했던 교수들의 강의 원고에 대하여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내용의 표준화를 위한 논의를 하였음) 표준화된 연구윤리교육을 시행하고자 하며, 향후 온라인 교육이나 연구책임자 대상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준비 중임

2) 연세대학교

- "연구윤리"라는 과목명을 가지고 개설한 경우는 없으나,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연구윤리에 관한 주제(내용)를 다루고 있는 과목은 총 3개임
  - 공과대학 : 대학 공통으로 "공학윤리와 연구방법론"
  - 생명과학부 : "생명윤리특강"
  - 심리학과 : "웹기반 연구윤리 교육프로그램"

주(회)수	공학윤리와 연구방법론	생명윤리특강
1주(회)	수업 소개 및 공학 윤리 총론	생명윤리특강 강의계획 공지
2주(회)	윤리란 무엇인가?	연구수행 과정에서의 연구진실성
3주(회)	공학의 역사와 엔지니어의 역할 변화	The History of Xenotransplantation and Ethical Issues
4주(회)	공학윤리란 무엇인가?	연구노트작성방법
5주(회)	공학윤리연습(1)	생명윤리 특강 강의계획 공지
6주(회)	공학윤리연습(2)	생명과학과 연구윤리의 역사
7주(회)	중간 시험 기간	〈논문작성과 윤리〉 – 올바른 인용과 표절의 문제 – 공로 배분과 저자 결정
8주(회)	위험의 이해와 대응, 책임	연구수행 과정에서의 윤리
9주(회)	실험실 및 연구윤리(특강)	
10주(회)	논문작성법(특강)	
11주(회)	공학설계방법론(특강)	
12주(회)	과학 기술의 발전과 정책(특강)	
13주(회)	지식재산권 이해(특강)	
14주(회)	21세기 글로벌 엔지니어의 도전과 과제	
15주(회)	기말 시험 기간	

- 연구윤리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2012년 2학기부터 선택적으로 2011년에 개발한 웹기반 프로그램을 N/NP로 수강 신청하도록 결정함(2012년 2학기에 총 9개학과에서 신청)

3) KAIST

- 연구윤리에 관한 공식 과목이 개설되어 있지는 않으나 2008년부터 연구윤리를 중심으로 한 온라인 교육과정을 개설해 모든 학부생과 대학원생이 참여하도록 하고 있음
  - 대학원 과정은 실험실 안전, 리더십이 주제이고 학부과정은 여기에 양성평등이 추가적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이와 같은 기본 틀 아래, 각 학과는 학문의 특성에 따라 특정 구성을 선택함. 즉, 실험이 필요하지 않은 수리과학과 컴퓨터 전공 대학원생들은 실험실 안전 영역은 이수하지 않아도 됨
  - 학생들은 영역별로 온라인 강의를 듣고 시험을 보게 되는데 모든 영역에서 80점 이상을 받아야 함
  - 학부생은 졸업전에 이수해야 하며, 대학원생은 첫 학기에 이수해야 함

- 또한 대학원생이나 연구원 및 교수를 대상으로 연구윤리 의식을 제고하고 연구부정행위 예방을 위해 쟁점이 되고 있는 연구윤리 주제에 대하여 특강 형식으로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실적은 다음과 같음
  - Current Challenges for Research Ethics : on American perspective(2009년)
  - 학술논문에서의 올바른 인용과 출판윤리 : 표절, 중복게재의 의미와 유형 및 학술적 글쓰기에서의 올바른 인용방법(2011년)
  - 학술저작물의 표절 : 법정사례를 중심으로 학술저작물의 표절 소개(2011년)
  - 연구윤리소개 : 연구부정행위와 관련 규정 등 소개(2012년)

4) 시사점 및 향후 방향

- 대부분의 대학에서 학부생을 대상으로 한 정규 과목에 의한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대학원의 경우도 정규 과목에 의한 것이 아니라 연구윤리 전문가 초청 특강이나 관련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연구윤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연구부정행위 예방을 도모하고 있음
  - 연구윤리 교육을 통한 연구윤리 의식의 제고는 한 두 번의 특강이나 교육으로 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참여자들의 자발적인 교육 참여의 동기 유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정규 과목을 통한 교육이 필요함

- 따라서 향후 각 대학에서는 학부생이든 대학원생이든 연구윤리 교육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전략을 세우고 실천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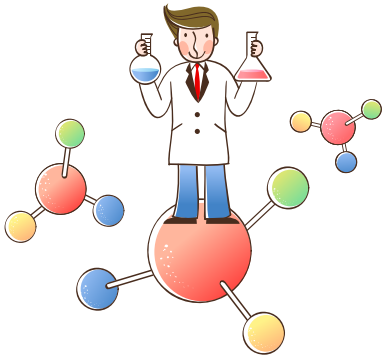

나 정부지원 연구윤리 교육

- 현재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 하에,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www.kird.re.kr)이 「연구윤리 방문형 교육 과정」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음
  - 강사 및 교육 내용을 모두 제공해 주므로 연구윤리 교육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에게는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매우 유익한 프로그램임

- 교육프로그램에서는 연구윤리의 이해와 올바른 연구윤리 의식, 연구수행 과정에서의 연구윤리 이해, 연구부정행위, 연구자의 사회적 책임 등에 대해 교육을 하며 교육대상은 교수 및 석 · 박사 연구원생임

- 주요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음

방문형 교육 공지	• KIRD[35] : 신청 공문 및 안내문 작성 • 교육부 : 전국 대학에 공문 발송
교육문의 및 신청	• 대 학 : 교육 문의 및 신청서 제출(이메일 제출) • KIRD : 신청 접수
접수 및 문의	• KIRD–대학 : 교육 일시 및 내용, 강사 등 최종 협의
과정 개설 및 입과	• KIRD : 교육 일시 1개월 전 과정 개설, 안내문 발송 • 대 학 : 교육 홍보 및 입과 안내
교육시행	• KIRD : 교육운영 전반 지원(예산, 강사, 운영 등) • 대 학 : 장소제공, 교육생 확보

35)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Korea Institute of Human Resources Development in Science & Technology)

3. 연구윤리 정보 제공 활성화

연구윤리정보센터 활용

- 한국연구재단 지정 연구윤리정보센터(www.cre.or.kr)에서는 연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연구윤리 궁금증을 해소하고, 보다 책임있는 연구문화 조성과 연구신뢰도 향상을 위해 다양한 연구윤리 정보와 교육콘텐츠를 개발, 보급하고 있으며, 연구기관 및 연구자를 위한 연구윤리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그림 7〉 정보포털(web) 운영
WWW.CRE.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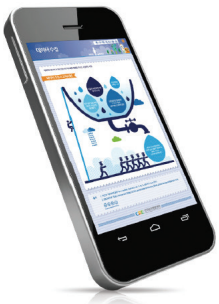

〈그림 8〉 모바일 앱(mobile app) 운영
연구윤리

- 연연구윤리정보센터는 웹사이트 www.cre.or.kr과 모바일 앱 “연구윤리”를 통해서 활용할 수 있음(구. 좋은연구www.grp.or.kr)

- 연구윤리 관련 규정 및 지침정보, 연구윤리 가이드, 국내외 연구윤리 동향을 제공하고 있으며, 논문출판 · 지식재산권, 데이터 관리 등 주제별 분류를 통해 더욱 다양한 사례의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기관 내 연구윤리 교육 및 연구자 자가학습을 위한 교재, 인포그래픽, 웹툰, 동영상 등 다양한 교육콘텐츠도 개발 · 제공하고 있음

〈그림 9〉 연구윤리정보센터 제공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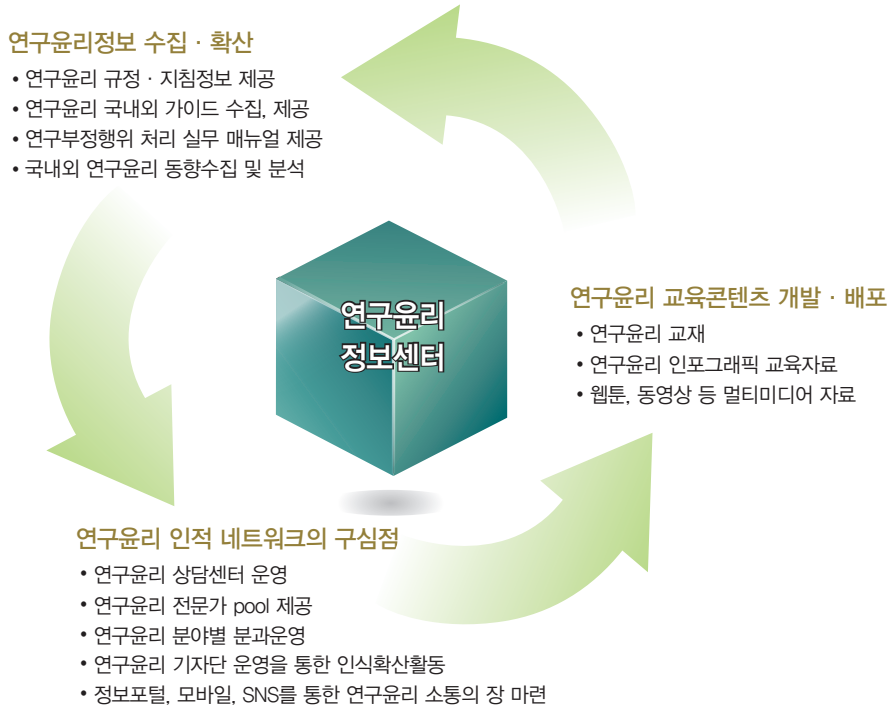

- 특히 기관 연구윤리 실무자들은 연구윤리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연구윤리 전문가 pool을 통해 기관 내 연구윤리 강사 섭외 및 연구부정행위 검증을 위한 조사위원 구성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음

- 연구윤리정보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상담서비스는 사례별 관련 전문가들의 1:1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연구기관에서는 기관 내 연구윤리 관리 체계 및 연구부정행위 검증과정에 대한 자문을 받을 수 있음

- 각 연구기관의 연구관련 웹페이지에 연구윤리정보센터 웹사이트, www.cre.or.kr을 링크해 놓는 것도 연구윤리 인식확산에 도움이 될 것임

부 록

1.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과학기술부 훈령) | 106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미래창조과학부령) | 118

3. 연구윤리 실무 관련 Q&A | 124

부록 1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정 2007. 2. 8. 과학기술부 훈령 제236호
개정 2008. 7. 28.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 73호
개정 2009. 9. 23.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141호
개정 2011. 6. 2.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218호
개정 2012. 8. 1.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260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지침은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 · 관리하거나 수행하는 대학 및 연구기관, 학술단체 등의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 「학술진흥법」제15조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①이 지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대학 및 연구기관, 학술단체(이하 "연구기관 등"이라 한다) 및 연구자와 이를 지원하고 관리 · 감독하는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기초연구사업 및 제14조에 따른 특정연구개발사업
2. 「우주개발진흥법」 제6조의2에 따른 우주개발사업
3. 「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법」 제8조에 따른 핵융합에너지연구개발사업
4. 「원자력진흥법」 제12조에 따른 원자력연구개발사업
5. 「과학기술기본법」 제17조에 따른 협동연구개발사업 및 제18조에 따른 과학기술협력사업
6. 「학술진흥법」제5조에 따른 학술지원사업
7. 그 밖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분야

② 제1항의 사업 이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제9조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자체규정을 마련하고자 할 경우 이 지침을 준용할 수 있다.

제3조(적용범위) 이지침은 연구개발 과제의 제안, 연구개발의 수행,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 연구개발의 전범위에 적용하며,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따른다.

제4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이 지침에서 정하는 연구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또는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2. "변조"는 연구 재료 · 장비 ·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 결과 등을 적절한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5.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6. 그 밖에 인문 · 사회 및 과학기술 분야 등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

연구기관 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부정행위 외에도 자체 조사 또는 예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자체규정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2장 연구기관등과 전문기관의 역할과 책임

제5조(연구환경 및 연구관리 제도의 개선) ①연구기관등의 장은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하고 연구윤리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연구 환경과 연구 문화를 조성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연구기관 등의 장은 연구윤리를 확보하고 연구부정행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연구수행 과정에서의 갈등이나 분쟁을 중재하거나 조정하는 기구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③연구자는 연구에 전념하고 연구윤리를 준수하며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연구윤리자문위원회 구성 · 운영)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연구윤리 정책 등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을 받기 위하여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연구 윤리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연구윤리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연구윤리자문위원회의 위원은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그 밖의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연구윤리자문위원회의 자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자신의 연구결과 사용) 연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연구논문 등 작성 시 이전에 발표하지 않은 자신의 연구결과를 사용
2.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게재 · 출간하여 본인의 연구결과 또는 성과 · 업적등으로 사용하는 행위금지
3.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인용사실을 표시하거나, 처음 게재한 학술지 등의 편집자 또는 발행자의 허락을 받은 후 사용

제8조(연구윤리에 대한 교육 및 지원) ①연구기관 등의 장은 연구자가 연구수행 과정에서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연구부정행위에 대응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윤리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 · 홍보 및 정보 제공, 연구윤리 교육 자료의 개발 · 보급 등을 위해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연구기관 등이 다음 각 호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조치를 추진할 경우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연구윤리 강화를 위한 전담부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연구윤리 교육 및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
3. 연구윤리 문화 확산 및 홍보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각종 사업에 필요한 경비

제9조(연구윤리 자체규정 마련) ①「학술진흥법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31조제1항의 연구윤리에 관한 자체규정(이하 "자체규정"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 이외의 연구기관은 협약 체결시 이 지침에서 제시하는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보고, 후속조치 등을 포함하는 경우 자체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본다.

1.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2. 연구부정행위의신고접수및조사등을담당하는 기구,부서또는책임자
3. 연구부정행위 자체조사 절차 및 기간
4. 예비조사 및 본조사실시를 위한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 등 검증기구의 구성 및 운영 원칙
5. 제보자 및 피조사자 보호방안
6. 판정 이후의 처리절차

②자체규정은 제2조 제1항 각 호의 사업 이외에도 적용할 수 있다.

제10조(연구부정행위 처리)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 전문기관 및 연구기관 등의 장은 연구부정행위 제보 접수창구를 마련하여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 및 전문기관이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를 접수하였거나 그 발생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내용을 이관하여 조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 또는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부정행위 검증을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1.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제22조제3항에 따른 재조사 요청내용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연구기관 등의 판정 또는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어 재조사가 필요한 경우
3. 연구기관 등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4. 연구기관 등의 장이 제13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요청한 경우

제3장 연구부정행위 제보자 등에 대한 보호

제11조(제보자의 권리 보호) ①제보자는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하여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해당 연구기관 등 또는 교육과학기술부, 전문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②제보는 구술 · 서면 · 전화 · 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실명으로 하여야 한다. 단, 익명 제보라 하더라도 연구과제명, 논문명,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받은 경우 연구기관 등 및 전문기관은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교육과학기술부장관, 전문기관 및 연구기관 등의 장은 제보자가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했다는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④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⑤제보자가 제3항의 불이익 또는 차별을 받거나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될 경우 해당 기관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⑥제보자는 제보 접수기관 또는 조사기관에 연구부정행위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⑦제보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보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12조(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①피조사자는 제보자의 제보나 연구기관 등의 인지로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조사기관은 검증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③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판정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④피조사자는 조사기관에 연구부정행위의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장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4장 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와 기준

제13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책임주체) ①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책임은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의 소속 기관에 있다.

② 연구기관 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전문기관에 직접 조사를 실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전문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검증 전문가 확보가 어려워 자체조사가 곤란한 경우
2.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3. 2개 이상의 연구기관이 참여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제14조(연구부정행위검증원칙) ①연구부정행위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해당 기관의 조사위원회에 있다. 단, 조사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피조사자가 고의로 훼손하거나 제출을 거부한 경우에 그 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다.

②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이의제기및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 및 일정을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피조사자에게는 해당 제보내용을 함께 알려주어야 한다.

③ 연구기관 등의 장은 조사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제보 받은 사항에 대한 연구부정행위 여부의 판단은 해당 연구가 수행되거나 결과물을 제출 또는 발표할 당시의 관련 규정 또는 학계 · 연구계의 통상적 판단기준에 따른다.

제15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 ①전문기관 및 연구기관 등의 장이 연구부정행위를 검증하고자 할 때에는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예비조사와 본조사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검증 절차 외에도 필요한 절차를 추가할 수 있다.

③해당 기관의 장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하였을 때에는 예비조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제16조(예비조사) ①예비조사는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하여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로, 제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한다.예비조사기구의 형태는 해당기관의 장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②해당 기관의 장은 피조사자가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한 때에는 본조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③해당기관의 장은 증거자료에 대한 중대한 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위원회 구성 이전이라도 제20조제2항에 따른 증거자료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해당기관의 장은 예비조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예비조사 결과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단, 익명제보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17조(본조사) ①본조사는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로, 제18조에 따른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조사위원회는 제14조제2항에 따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등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8조(조사위원회구성등) ①해당기관의 장은 본조사를 위해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관의 실정과 연구부정행위의 규모 · 범위 등을 고려하여 다른형태의 검증기구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조사위원회 또는 검증기구를 구성할 때에는 해당 연구분야의 전문가 및 해당 기관 소속이 아닌 외부인이 다음 각 호와 같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구 분야 전문가 50% 이상
2. 해당 기관 소속이 아닌 외부인 30% 이상

제19조(조사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조사위원이 될 수 없다.

1.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
2.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사제관계에 있거나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거나 하였던 자

3.기타 조사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②해당기관의 장은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제18조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정당한 사유로 조사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단, 제보자의 사정에 의해 연락을 취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이 경우 관련 내용을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③조사위원이 조사대상 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0조(조사위원회의 권한) ①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게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해당 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실험실 출입제한 및 관련 자료의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조사위원회는 해당기관의 장에게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21조(판정) ①판정은 해당기관의장이 조사결과를 확정하여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

②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기관은 제보사실 이관기관,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2조(이의신청 등) ①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예비조사 결과 또는 판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를 실시한 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조사를 실시한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이의신청과는 별도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당해 건에 대하여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장 조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등

제23조(조사결과의 제출) ①전문기관 및 연구기관 등의 장은 예비조사 및 본조사를 실시한 경우 조사 종료 후 각각 10일 이내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내용
2. 조사결과
3. 조사위원회의 위원 명단(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4.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예비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5. 해당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6. 관련 증거 및 증인, 참고인 기타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7.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내용
8. 검증결과에 따른 처분요구결과(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연구기관 등의 장은 조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견한 경우 즉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보고받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과 조사를 실시한 연구기관 등의 장은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해당 규칙에 중대한 위반사항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기타 전문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24조(조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23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조사결과가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구과제의 협약해약, 참여제한 또는 사업비 환수, 연구부정행위 자에 대한 징계 요구 등의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를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가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하여 추가조사 및 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경우 직접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5조(조사의 기록과 정보의 공개) ①조사를 실시한 기관은 조사 과정의 모든 기록을 음성, 영상, 또는 문서의 형태로 반드시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교육과학기술부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해당 보고서를 10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②조사보고서 및 조사위원 명단은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다.

③조사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은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26조(업무의 위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0조제1항 및 제3항과 관련한 연구부정행위의 접수 및 조사에 관한 사항, 제23조제3항과 관련한 수사의뢰 또는 고발 등에 관한 사항, 제24조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한 후속조치 및 조사, 제25조제1항과 관련한 보고서의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7조(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조사요청)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국가적 현안으로 대두되어 범정부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 등에 대해서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28조(재검토기한) 「훈령 ·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2007. 2. 8. 과학기술부훈령 제236호)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체규정) 제2조제1항의 대상기관 중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은 이 지침이 제시하는 원칙과 기준을 토대로 발령일 이후 국가연구개발사업 · 과제의 수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연구윤리의 확보 및 진실성 검증을 위한 자체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은 지침 발령일로부터 3개월 이내 마련하여야 한다.

〈별표〉 발령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자체규정을 마련해야 하는 기관

1. 「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제2항의 정부출연연구기관등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 중 2002년에서 2004년간 연평균 100억원 이상의 연구개발비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대학

부 칙(2008. 7. 28. 교육과학기술부훈령 제73호)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체규정) 이 지침 시행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9. 9. 23. 교육과학기술부훈령 제141호)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6. 2. 교육과학기술부훈령 제218호)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 구성된 「연구윤리자문위원회」는 이 지침 제6조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2. 8. 1. 교육과학기술부훈령 제260호)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록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3.8.5] [미래창조과학부령 제6호, 2013.8.5, 제정]

미래창조과학부(연구제도과) 02-2110-273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식) ①「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술수요조사의 서식: 별지 제1호서식
2. 영 제6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3. 영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연차실적 · 계획서: 별지 제3호서식
4.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최종보고서 · 요약서: 별지 제4호서식
5.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주관연구기관의 자체평가의견서: 별지 제5호서식
6. 영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계획과 집행실적의 대비표: 별지 제6호서식
7. 영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구기관의 자체 회계감사의견서: 별지 제7호서식
8.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결과 활용 보고서: 별지 제8호서식
9. 영 제24조제6항에 따른 외국정부 · 기관 · 단체 등 접촉신고서: 별지 제9호서식
10. 영 제24조의9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현황의 서식: 별지 제10호서식

②별지 제9호서식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1. 주요 협의내용(발표자료 등) 및 보안성 검토자료
2. 반출입되는 기자재목록(노트북컴퓨터, USB메모리, 카메라 등) 및 보안대책
3. 사후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③별지 제10호서식에는 보안사고 대응체계 대책이 첨부되어야 한다.

제3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연구부정행위(이하 "연구부정행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행위로 한다.

1. 영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조: 연구자 자신 또는 타인의 연구개발 자료나 연구개발결과를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2. 영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변조: 연구자 자신 또는 타인의 연구개발 자료나 연구개발결과를 인위적으로 변형 또는 삭제하는 행위
3. 영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연구자 자신 또는 타인의 연구개발 자료나 연구개발결과에 대하여 과학적 · 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하거나 과학적 · 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4. 영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표절: 연구자 자신 또는 타인의 연구개발 자료나 연구개발결과를 적절한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
5. 영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하는 행위: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제4조(연구윤리 확보 등을 위한 시책)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영 제30조제2항에 따라 연구윤리 확보 및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20일 이내에 그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제5조(연구윤리를 위한 자체규정에 포함될 사항) 영 제31조제1항에서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2. 연구부정행위 제보의 접수 및 관련 기구 · 부서 또는 책임자
3. 연구부정행위 검증절차 및 기간
4. 이의신청
5.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의 권리 보호
6. 조사의 기록과 정보의 공개
7. 연구부정행위 시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8.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자체 교육운영 프로그램

제6조(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 ①제5조제2호에 따른 제보는 실명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야 한다. 다만, 연구과제명, 논문명,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제보받은 경우에는 익명제보도 포함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를 접수하거나 그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해당 제보내용이 연구기관에 관한 사항이면 해당 연구기관으로 이관하여 검증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연구부정행위 검증절차 및 기간) ①제5조제3호에 따른 검증절차는 예비조사, 본조사,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에 대한 결과통보로 이루어진다. 다만, 검증기관(검증주체인 전문기관 또는 연구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예비조사 과정에서 조사대상자가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하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②제5조제3호에 따른 검증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검증기관의 장은 그 기간 내에 검증을 완료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검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예비조사) ①제7조제1항에 따른 예비조사(이하 "예비조사"라 한다)에서는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하여 같은 호에 따른 본조사(이하 "본조사"라 한다) 실시 여부를 결정하며, 예비조사 담당기구의 형태는 검증기관의 장이 결정한다.

②제보에 따라 검증을 하는 경우에는 제보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예비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③ 검증기관의 장은 증거자료에 대한 중대한 훼손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회 구성 전이라도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증거자료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본조사) ①본조사에서는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조사 · 결정하며, 본조사는 이를 위한 별도의 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실시한다.

②본조사를 할 때에는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제10조(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권한) ①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 전문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사위원회의 위원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1. 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인척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와 사제(師弟)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그 밖에 조사대상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등 조사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③검증기관의 장은 본조사에 착수하기 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회 위원의 명단을 알려야 한다. 다만, 제보자의 사정으로 연락을 취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하되 그 내용을 조사결과보고서에 적어야 한다.

④검증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제보자가 조사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한 경우 그 신청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을 철회하고 다른 사람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조사과정에서 조사위원회 위원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조사대상자, 증인 및 참고인에게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⑥조사위원회는 조사 관련자에게 연구부정행위의 검증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검증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실험실 출입제한 및 관련 자료의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⑦조사위원회는 조사대상인 연구부정행위가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⑧조사위원회는 조사 결과 연구부정행위가 사실인 것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관련자에 대한 적절한 제재조치를 검증기관의 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11조(결과통보) ①제7조제1항에 따른 결과통보(이하 이 조에서 "결과통보"라 한다)는 예비조사의 경우 제보자에게, 본조사의 경우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에게 각각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비조사의 결과가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이면 예비조사 결과통보의 내용에 그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②결과통보는 예비조사와 본조사가 종료된 날부터 각각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2조(이의신청) ①제5조제4호에 따른 이의신청은 제11조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증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

②검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13조(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의 권리 보호) 제5조제5호에 따른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검증기관은 검증과정에서 조사대상자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검증기관의 장은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했다는 이유로 제보자가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제보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 접수 및 조사 관련 사항은 조사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5조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
4. 조사대상자는 검증기관에 연구부정행위의 검증절차 및 일정 등을 알려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장은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5. 제보자는 제보 접수기관 또는 검증기관에 연구부정행위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4조(조사의 기록 및 공개) ①제5조제6호에 따른 조사의 기록은 조사과정의 전부를 음성, 영상, 또는 문서의 형태로 기록하여야 하며, 해당 기록은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②조사결과는 제11조에 따른 통보 전에는 외부에 공개할 수 없으며, 조사위원회 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사람의 이름은 당사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중대한 법령위반 사항의 보고) 검증기관의 장은 조사과정에서 중대한 법령 위반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중앙행정기관에 대한 검증결과의 통보) 영 제31조제2항 본문에 따른 검증결과의 통보는 예비조사 및 본조사의 결과 확정 후 각각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예비조사 결과 통보
   가. 제보의 내용
   나. 조사결과
   다.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라.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의 진술내용
2. 본조사 결과 통보
   가. 제보의 내용
   나. 조사결과
   다. 조사위원회 위원 명단
   라. 해당 연구에서의 조사대상자의 역할과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
   마. 관련 증거, 증인, 참고인, 그 밖에 자문에 참여한 사람의 명단
   바.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의 진술내용

제17조(전문기관에 대한 검증 요청) 영 제31조제2항 단서에서 "검증 전문가 확보가 어려운 경우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검증 전문가 확보가 어려워 자체조사가 곤란한 경우
2.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2 이상의 연구기관이 참여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부칙 〈제6호, 2013.8.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영의 위임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규칙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록 3

연구윤리 실무 관련 Q&A

Q1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연구윤리 확립을 위해 연구윤리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에게 특히 요청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A1 연구윤리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이 대학의 교수나 일반 연구자들처럼 직접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는 드물어 연구윤리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는 옳지 않습니다. 책임있는 연구가 수행되기 위해서는 연구자 자신의 높은 연구윤리 의식과 탁월한 연구수행 능력 이외에도 그 연구와 관련된 제반 규정(지침)이나 행정적인 절차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연구자들은 연구의 아이디어를 내고 연구 주제를 정해 관련 자료를 조사, 수집하고 실험하고, 분석하고, 결론을 도출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의 결과를 학회에서 또는 학술지 논문으로 발표하거나 각종 연구 모임에 참여하여 토론하는 등 매우 바쁘기 때문에, 자신의 연구와 관련되어 어떤 지침의 어느 부분을 유의해야 할 것인지를 세밀하게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구윤리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는 바로 연구자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고려해야 할 부분을 하지 못할 때 관련 규정 혹은 타당한 관행에 대해 직, 간접적으로 알려주고 조언을 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히 연구 결과 보고를 언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연구비 정산은 맞게 되었는지 등에 대해 관심을 갖고 업무를 처리하면 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자신이 속한 기관의 연구윤리 지침과 그것의 상위에 있는 우리나라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교육과학기술부의 훈령이나 국과위의 규칙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하여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각 지침의 내용은 연구부정행위의 개념과 범위, 처리절차,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연구윤리 교육의 실시 등에 대해 일반적인 사항을 제시하고 있어, 이 규정의 근본 정신을 이해하고 구체적인 맥락에 적용을 위해서는 대내외의 선행 사례에 대한 치밀한 탐구 및 고도의 통찰력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자신이 속한 기관 이외의 연구윤리 지침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한 기관의 연구윤리 확립을 위해 관련 규정의 신설 및 보완, 연구윤리 교육의 실시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도 연구윤리 담당 실무자로서 적실성있는 아이디어를 도출하여 추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내외의 타 기관의 연구진실성 확립을 위한 정책과 관련 규정을 탐구하고 연구윤리 교육의 현황을 검토하여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 손쉽게 관련된 정보나 자료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교육부의 지원 하에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KIRD)에서 운영하고 있는 연구윤리정보센터(www.cre.or.kr)를 자주 방문하는 것입니다.

각 기관의 연구자들은 보통 연구윤리 업무 담당자들이 자신의 연구를 수행하는데 도움(help)이 안 되고 방해(hinder)가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구윤리 실무자가 '연구에 방해가 된다'는 의미는 관련 규정을 잘 모르거나 알았어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하고, 규정을 이용하여 간섭하고 통제할 뿐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괴롭히고 있다는 인식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윤리 실무자는 이러한 오해와 편견이 생기지 않도록 연구의 전 과정에서 연구자가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타당한 적용, 적절한 사전 및 사후 관리 등 친절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태도와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Q2 연구부정행위를 접수 받을 때 연구윤리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가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A2 일반적으로 각 기관의 연구윤리 지침에 연구부정행위 접수를 위한 공식적인 창구가 지정되어 있으므로, 접수자는 이 공식적인 창구를 통해 제보를 접수해야 합니다. 만일 연구부정행위 제보를 접수하기 위한 공식적인 창구가 마련되어 있지 않을 경우, 혼란을 줄이기 위해 가급적 연구부정행위 처리와 가장 근접한 부서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담당자, 담당 내용 등을 지정해 놓아야 합니다. 제보 접수처에 대한 안내는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연구부정행위 제보는 구술 · 서면 · 전화 · 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실명으로 하도록 되어 있지만, 익명 제보라 하더라도 연구과제명, 논문명, 구체적인 연구부정

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받은 경우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실무자는 제보 접수 창구에 제보가 들어 왔을 때 이러한 제보의 요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한 후 접수를 받아야 합니다.

접수자는 제보를 받을 때 제보 서식에 의거 제보자, 제보 일시, 제보 내용, 제보 방법, 관련 자료 등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록을 남겨야 하며, 제보자에게 추후의 연락 방법에 대해 미리 확인을 받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제보자가 추후의 연락을 원하지 않을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미리 확인을 거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침에는 개인 제보의 접수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제보가 개인이 아닌 정부나 언론기관일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기관 자체의 세부 지침을 마련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Q3 A 교수는 2008년 B 대학교에서 근무할 당시 C 대학교 교수 D와 교육과학기술부의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였고 그 결과를 학술지 논문으로 게재하였습니다. A 교수는 2010년 E 대학교로 소속을 옮겼는데 위 논문에 대해 2012년 표절의 의혹이 E 대학교로 제보되었습니다. 어느 대학이 조사하여야 합니까?

A3 국과위 규칙과 교육과학기술부 훈령에 의하면 조사의 책임은 B 대학교에 있습니다. E 대학교는 이 제보를 B 대학교에 이관하고 B 대학교가 예비조사를 통해 제보의 타당성을 조사하고 본조사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만일 A 교수가 지리적 차이 등을 이유로 B 대학교의 조사에 협조하지 않더라도 B 대학교는 이러한 정황을 고려하여 자체적인 판단을 내리고 이 결과를 E 대학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 때 C 대학교는 D 교수에 대해 별도의 조사를 따로 수행할 필요는 없으나 B 대학교가 연구부정행위로 판정하고 D 교수의 책임도 인정하였을 경우에는 D 교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Q4 A 교수의 2009년 논문에 대해 이 A 교수가 2002년에 다른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과의 중복 혐의가 제기되었습니다. 2002년 연구는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고 교내 연구비로 수행되었으며 2009년 연구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대학은 자체 규정에서 검증 시효를 5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제보는 검증의 대상이 됩니까?

A4 시효는 관련된 연구의 최종 날짜를 기준으로 하므로 2002년과 2009년 연구 모두 검증대상이 됩니다. 특히 2009년 연구의 진실성이 쟁점이 되므로 2002년 연구가 정부 연구지원이 아니고 만 5년이 경과하였더라도 검증하여야 합니다. 더 나아가 진실성 검증을 위해서는 두 연구 뿐 아니라 해당 연구자의 과거 모든 연구가 원칙적으로 검증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Q5 예비조사 단계에서 주로 확인하고 처리해야 할 것들은 무엇입니까?

A5 기관의 연구부정행위 제보 접수처로부터 넘겨받은 제보 내용에 대해 예비조사 단계에서 해야 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제보된 내용에 대한 기초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정리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초 사실의 확인과 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정리란 1) 제보자의 이름, 제보 일시, 제보 내용(제보자가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피조사자의 이름과 소속 및 연구수행 당시의 소속 기관을 확인 2) 제보의 내용이 어떤 연구부정행위의 범주에 관한 것인지를 파악하여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것으로, 이를테면 연구부정행위의 범주가 표절에 관한 사항일 경우는 제보된 텍스트, 논문, 보고서 등 관련된 기본 자료를 입수하여 제보 사항과 비교 3)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했는지를 확인하여 연구지원기관에 보고 대상인지를 검토 4) 제보된 사항이 고발이나 연구 중단 등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체로 표절 등 단순 사례의 경우에는 즉각적인 조치에 해당하지 않으며, 즉각적인 조치는 제한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둘째, 예비조사가 시작되었을 때 피조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만 하고, 본조사의 필요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본조사를 실시하여야 할 경우, 예비조사 결과 보고서는 특별한 양식이 필요 없지만, 예비조사 단계에서 행한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이때 기록해야 할 주요 요소는 예비조사 일시, 장소, 예비조사 위원, 제보의 내용과 그에 대한 조사 내용 및 결정 내용, 판단의 근거 등입니다.

셋째, 예비조사 결과를 도출하고, 보고서를 작성한 후, 연구진실성위원회(또는 예비조사 결과 처리 부서)에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Q6 예비조사 단계에서도 제보자나 피조사자를 대상으로 질의를 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질의하는 것이 좋습니까?

A6 예, 질의를 할 수 있습니다.

예비조사 단계에서도 필요시 피조사자를 대상으로 질의(Inquiry)를 실시할 수도 있고, 제보자에게 추가 자료 또는 설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연구부정행위 제보가 표절에 관한 경우, 제보의 내용만으로는 객관적인 사실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생각될 때, 표절 의심 대상 저작물의 출판 일시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공저 단행본이나 논문일 경우, 각각의 역할 정도 등에 대해 피조사에게 공문을 통해(간단하다면 전화나 이메일로)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제보자에게도 제보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나 설명을 공문을 통해(간단하다면 전화나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실무자들은 질의 일시와 내용, 질의 전달 방법, 그에 대한 답변, 제보자나 피조사자로부터 받은 설명이나 관련된 자료(공문, 이메일, 구두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확하게 기록을 남기고 보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비조사 결과를 작성하거나 또 본조사를 해야 할 경우, 이때의 내용들이 모두 중요한 판단의 기초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예비조사 단계에서 기초 사실 조사 서류철,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 대한 질의 응답에 관한 서류철 등을 각각 별도로 만들어 관리하는 것이 편리할 것입니다.

Q7 예비조사 단계에서 본조사 여부를 결정한다고 했는데, 어떤 경우에 본조사가 불필요하고, 어떤 경우에 본조사를 해야 합니까?

A7 본조사 단계로 넘어가지 않고 예비조사로만 끝나는 경우는 통상 기초 자료를 토대로 제보가 부정행위 범주에 속하지 않거나, 문제의 정도가 미미하거나 단순 실수임이 명확할 경우, 또한 피조사자가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한 때에는 본조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초 자료를 토대로 본조사가 필요한 정도로 구체적인 의혹이 판단되거나, 예비조사의 범위를 넘어 고도의 전문가의 평가 및 자문이 요청되는 사안일 경우에는 예비조사 위원회의 최종 논의를 거쳐본 본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본조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할 때, 관련 회의 자료와 함께 그 타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표절 및 중복게재의 경우, 일반적으로 학문영역의 독특한 특성 때문에 또 표절이나 중복게재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쉽게 합의할 수 없기 때문에, 연구윤리 전문가나 해당 영역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며, 따라서 표절 및 중복게재 관련 연구진실성 검증은 피조사자가 인정하지 않는 한, 대체로 예비조사 단계로 끝나기 보다는 본조사 단계까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일 연구부정행위를 검증해야 할 기관이 연구부정행위 검증 경험과 역량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굳이 예비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이 바로 본조사로 넘겨 경험이 많은 외부의 전문가와 함께 검증 작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Q8 본조사가 결정되면 원할한 본조사의 진행을 위해 먼저 준비하고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A8 연구진실성위원회(또는 관련 부서)는 예비조사 결과 본조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면, 본조사를 위한 준비를 하고, 시행해야 하는데, 특히 본격적인 본조사가 실시되기 전에 실무자가 확인하고 준비해야 할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본조사위원회의 구성은 지침에서 규정한 대로, 위원장 1인 포함 5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해당 연구분야의 전문가 50% 이상 및 해당 기관 소속이 아닌 외부인이 30% 이상 되도록 합니다. 특히 본조사위원을 구성할 때, 실무자는 위촉하고자 하는 조사위원이 조사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지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즉, 조사위원이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친·인척 관계인지, 사제관계에 있는지, 공동연구에 참여하고 있거나 한 적이 있는 지 등에 대해 면밀하게 파악하여야 하고, 만일 이러한 사유에 해당될 때는 조사위원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또한 조사위원이 조사 대상 과제와 이해관계가 있을 때 스스로 조사위원을 기피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각 기관에서는 위촉하고자 하는 본조사위원이 조사위원으로서 전문성을 가지고 성실하게 참여할 수 있는 인사로 구성하고자 하지만, 동료 교수의 문제를 평가해야 하는 부담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점 등을 들어 참여를 고사하는 경우가 많아 위원 구성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를테면, 표절에 대한 판단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교내외 인사를 2-3년 주기로 상설 조사위원으로 임명하고 이에 대한 수업 감면이나 적절한 수당 지급, 혹은 교수 업적 평가에서 봉사 점수에서 가산점 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만 합니다.

둘째, 본조사위원의 구성이 확정되면, 그 명단을 제보자에게 통보하고 이의 신청을 받습니다. 만일 제보자가 정당한 사유로 조사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 조사위원을 교체하고 다시 통보해야 합니다. 만일 제보자가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정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반영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최종 보고서에 관련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또한 제보자의 사정에 의해 연락을 취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경우 관련 내용을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셋째, 조사위원에 대한 기피, 제척, 회피 등에 대한 절차가 마무리 되면 본조사가 언제 시작되며, 어떤 일정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하여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조사위원이 최종 확정되면 이를 조사위원에게도 통보

하면서 조사위원의 역할과 권한, 의무, 향후 일정 등에 대해 같이 알려 줘야 합니다. 통상 본조사위원회가 처음 개최될 때 조사위원에 대한 임명장(위촉장)을 수여하며, 본조사위원으로 참여하게 된 조사위원들은 본조사 기간에 공정하고 성실하게 조사를 하며, 조사 중 또는 이후에도 조사를 통해 알게 된 어떤 내용에 대해서도 타당한 사유가 아니면 외부에 절대 노출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Q9 본조사를 위한 준비가 마무리되어 본격적으로 본조사가 시행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A9 본조사의 목적은 부정행위 사실 여부에 대한 확인 뿐 아니라 부정행위가 있었을 경우 그 의도, 행위의 심각성, 반복성 여부, 경위, 공동 연구자들의 역할까지를 모두 파악하는데 초점이 있습니다. 즉, 단순히 위조나 변조, 표절이 있었는지 사실 관계의 확인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연구자의 의도나 경위, 그리고 엇갈리는 증언 사이에서 연구자 간의 역할 관계까지도 파악하여야 합니다.

본조사의 과정은 부정행위 유형에 따라 천차만별이고, 특히 복잡한 사안의 경우 수차례의 회의와 면담, 질의, 변론 등이 반복될 수도 있어 표준적인 절차를 제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만,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본조사 위원장의 진행으로 실시하면 됩니다. 이때 실무자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조사기간 내에 관련 규정을 준수하면서 쟁점 사항이 충분히 논의되어 타당한 결론에 이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Q10 예비조사에서 필요한 사전 조사와 피조사자 의견 진술까지 확보하였습니다. 본조사에서도 이를 반복하여야 합니까?

A10 예비조사 단계에서 피조사자가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였다면 예비조사만으로도 부정행위 판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본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하다면 본조사에서도 출석을 요구하여 추가적인 질의를 할 수 있다.

Q11 조사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연구실에 대한 정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피조사자의 연구실 출입제한 조치와 관련 자료 일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조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합니까?

A11 출입제한, 자료 제출 등의 요구를 피조사자가 따르지 않을 경우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조사위원회는 이러한 행위를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간접적 증거로 인정하여 판정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Q12 조사위원회의 판정 결과에 피조사자와 제보자는 끝까지 수긍하지 않을 경우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와 제보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얼마까지 부여하여야 합니까?

A12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동일한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은 반드시 같은 횟수의 의견진술 기회를 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피조사자의 의견을 계속 확인하여 조사결과에 포함시키는 절차를 반복할 필요는 없고 조사위원회가 적정한 시점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최종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연구일 경우 연구비 지원기관에, 그렇지 않을 경우 교육부 등에 피조사자가 이의를 제기할 것이나 원칙적으로 조사의 책임이 있는 연구기관의 역할은 최종 판정 단계까지입니다.

Q13 본조사 과정에서 여러차례 회의를 거쳤으나 조사위원들 사이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습니다. 일부는 연구부정행위라고 주장하고 일부는 학계의 관행상 부정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팽팽히 맞섭니다. 어떻게 결론을 내려야 합니까?

A13 이러한 가능성을 미리 염두에 두고 조사위원회 운영 세부 규정을 만들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과위 규칙이나 교육과학기술부 훈령에서 의결에 필요한 기준을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대학 자체적으로는 조사위원회 개시에 앞서 재적위원 과반 출석 2/3 찬성 등 필요한 원칙을 미리 합의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Q14 조사위원회가 진행되는 도중 제보자가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이 시작된 경우 조사위원회는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조사를 멈추어야 합니까?

A14 현행 규정상 뚜렷한 기준은 없으며 해외 사례에서도 대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대체로 표절, 위·변조 등 연구의 진실성과 관련하여서는 조사를 계속 진행하고 저자권 배분, 지적재산권 등과 관련하여서는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진행을 중단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재판이 완결되면 즉시 조사위원회를 재개하여 결론을 마무리하여야 합니다.

Q15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최종 보고받은 연구진실성위원회 위원의 상당수가 조사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A15 조사위원회의 독립성은 엄격히 유지되어야 합니다. 연구진실성위원회 혹은 대학 내부의 별도의 기구가 조사위원회의 결론을 바꾸어서는 안됩니다. 단, 대학 자체의 내부 규정에서 재조사에 대한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습니다.

Q16 조사위원회 구성 단계에서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이메일로 알려주고 기피신청의 기회를 주었으나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종 판정 이후 조사위원 중 일부가 피조사자와 가까운 관계임을 주장하며 다시 조사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A16 국과위 규칙 제13조와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19조에서 기피신청 기회를 규정하고 있으나 엄밀한 방법을 적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조사의 책임이 있는 연구기관은 가능한 한 최대한의 방법을 통해 제보자와의 연락을 시도하여 그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충분한 노력을 하였다면 판정 이후 이를 이유로 재조사를 실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Q17 본조사가 마무리된 후 최종보고서를 작성할 때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도록 해야 합니까?

A17 본조사 활동이 끝나면,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해야 합니다. 최종보고서에 담아야할 내용에는 i) 제보 내용, ii) 조사위원회의 조사 대상 부정행위 목록, iii) 조사 진행 경과, iv) 예비조사의 결과, v) 관련 증거나 증인 진술, vi)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변론 또는 의견진술 내용과 이에 대한 조사위원회의 판단, vii) 부정행위에 대한 최종 결론과 각 당사자의 해당 행위에서의 역할, viii) 부정행위의 심각성이나 반복성, 의도성에 대한 조사위원회의 판단과 이에 기반을 두어 후속조치의 적절한 수위에 대한 건의, ix) 조사과정에서의 문제점이나 한계, 또는 건의 사항, x) 조사위원의 명단 등입니다.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는 보고받은 조사결과 보고서를 최종 확정하여 그 결과를 피조사자와 제보자에게 통보하며, 연구지원기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Q18 교원의 재임용을 위한 서류 심사 과정에서 중복게재 의심이 발견되는 경우 재임용심사위원회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합니까?

A18 교원이 해당 대학 소속일 경우 연구진실성위원회 또는 관련 창구에 재임용심사위원회가 제보하는 형식을 갖추어 공식적인 조사 절차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위원회 명의 제보도 가능하고 위원장이 개인 자격으로 제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Q19 교육과학기술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2011년 개정되었고 2012년 수정되었습니다. 각 기관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합니까?

A19 개정된 지침의 부칙에 지침 제2조 제1항의 대상기관 중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고등교육법」제2조의 대학은 이 지침이 제시하는 원칙과 기준을 토대로 발령일 이후 국가연구개발사업 · 과제의 수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연구윤리의 확보 및 진실성 검증을 위한 자체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제2항의 정부출연연구기관등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그리고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 중 2002년에서 2004년간 연평균 100억원 이상의 연구개발비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대학 해당하는 연구기관은 지침 발령일로부터 3개월 이내 마련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윤리 지침 혹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 등을 정부의 지침 개정안에 따라 개정하여야 합니다. 개정해야 할 사항은 첫째, 부정행위 발생시 검증 시효를 기존에 5년으로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조항 삭제가 필요합니다. 둘째, 본조사를 위한 조사위원회의 구성에서 외부 전문가 비율을 2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자신의 연구결과 사용에 대한 원칙을 추가하여야 한다. 이미 많은 대학이 자료의 중복사용 혹은 중복게재를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 혹은 지침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연구기관은 이에 대한 조항의 삽입이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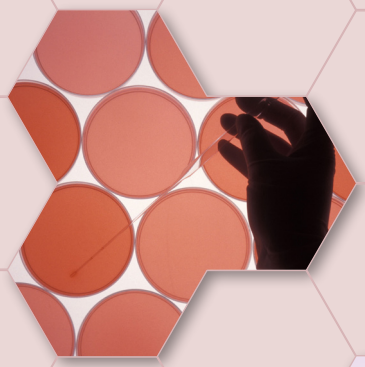

관련서식(예시)

1. 피조사자의 소명자료 제출에 대한 공문 서식 | 138

2. 예비(본)조사위원의 서약서 | 140

3. 연구진실성 조사위원회 회의록 | 141

4. 예비조사 보고서 양식 | 144

5. 최종결과 보고서 양식 | 147

서식 1 피조사자의 소명자료 제출에 대한 공문 서식[32]

대학로고

0 0 대 학 교

수 신 000 (피조사자)

(경 유)

제 목 연구진실성 조사위원회 제보된 내용에 대한 피조사자의 소명자료 제출

연구진실성 조사위원회에서는 [사건번호 : 0000-000호]에 대하여 0000년 00월 00일 회의한 바 제보된 내용에 대하여 피조사자의 소명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받고자 합니다.

– 아 래 –

1. 제보내용 : 첨부자료 참조
2. 제출사항 :
   가. 00 및 00별 의문 제기된 내용의 소명 및 해당자료 제출
   나. 공동 00 및 공동 00에 대한 피조사자의 연구 분야 역할에 대한 사항 기술 및 해당 자료 제출
      1) 공동00 : 첨부자료[00 부정행위 : 나, 다]
      2) 공동00 : 첨부자료[00 부정행위 : 다, 마, 바, 사, 아, 자, 타, 파]
   다. 공동 00의 원저자 개인별 연락처 제출
      – 공동00 : 첨부자료[00 부정행위 : 마, 바, 사, 아, 자, 타, 파]

32) 이하의 제 서식은 일부 대학에서 실제 사용되고 있는 서식의 예로서, 해당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수정·보완 사용 가능함.

라. 원저자 개인별 연락처 프린트물 및 파일 각 1부

마. 교재 증거물 원본 각 1부

바.「0000과 xxxx」제보 의혹 교재의 원본 증거물 제출

1)「0000과 xxxx」00출판사 – 000 외 00인의 0000년, 0000년판 각 1부

2)「0000과 xxxx」000 – bbb외 00인의 0000년 개정판 1부

3. 제출기일 : 0000년 00월 00일(요일)

4. 제출방법 :

가. 소명 내용 프린트물 및 파일 각 1부

첨부 연구진실성 조사위원회 제보내용 1부. 끝.

연구진실성 조사위원장

간 사 000 **위원장** 000

협조자

시 행 000–000 (0000. 00. 00) 접수

우 447–0009 aaa bbb ccc 00번지 연구진실성 조사위원회 / http://www.bbb.ac.kr

전화 00–000–0000 전송 00–000–0000 / aaaaa@bbb.ac.kr / 공개

서식 2

예비(본) 조사위원의 서약서

서 약 서

성명 :

소속 :

본인은 00대학교 연구진실성 검증을 위한 예비(본) 조사위원으로서, 공정하고 성실하게 조사를 함은 물론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일체의 내용에 대해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않는 한, 조사 중이든 조사가 끝난 후에도 공개하지 않을 것을 엄숙하게 서약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조사위원 인

00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 위원장 귀하

서식 3

연구진실성 조사위원회 회의록

연구진실성 조사위원회 회의록

1. 일　시 : 0000년 00월 00일(금) 12시30분 ~ 16시30분

2. 장　소 : 00관 00층 소회의실(00호실)

3. 위원 출 · 결 사항 :
   o 참석 위원(7인) : aaa(위원장), bbb, ccc, ddd, eee, fff, ggg
   o 결석 위원(0인) :

4. 회의 순서 :
   가. 성원보고 및 개회
   나. 전회의록 보고
   다. 제보내용 Ⅰ조사, 검증 및 심의
   라. 제보 Ⅰ, Ⅱ의 종합판정
   마. 기타 안건 토의
   바. 폐회

5. 회의내용 :

   가. 성원보고 및 개회선언

   간사 : 본조사위원회 재적위원 0인 중 0인이 참석하였으므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위원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0000년도 제3차 연구진실성 조사위원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간사는 0000년도 제2차 연구진실성 조사위원회의 회의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 0000년도 제2차 연구진실성 조사위원회의 회의내용을 별도로 작성한 회의록 요약본에 의거 상세히 설명하다.

   나. 조사위원회 종합의견에 대한 제보자의 이의제기에 대한 결정

위원장 : 우리 조사위원회에서 지난회의에.....

⋮

위원장 : 모든 결과보고서는 총장님의 승인 후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며, 통보사항은 제보내용 및 조사내용 결과를 통보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하 생략

다. 조사위원회 종합의견에 대한 피조사자의 이의제기에 대한 결정

라. 제보 Ⅰ의 교재부정행위 의혹건에 대한 종합판정

마. 제보 Ⅱ의 논문부정행위 의혹건에 대한 종합판정

위원장 : 제보Ⅱ에 대한 우리조사위원회의 종합의견은

⋮

으로 종합의견을 도출하였고, 이에 대한 판정은"위원 0명중 0명 모두 표절 및 이중게재 등의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로 볼 수 없음"으로 판정하였습니다.

위원장 : 종합의견 및 판정을 검토한 결과 윤문하게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조정하겠습니다.

종합의견

⋮

* 본조사위원 모두가 본 사안에 대해 공통적인 의견을 제시하였기에 각 위원들의 견해와 근거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고 하나로 정리함.

종합판정
"표절 등의 연구부정행위로 볼 수 없음"

위원들 : 재청. 동의

위원장 : 제보 I 의 내용.....검토사항에서 제외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또한 제보 II에 대한 논문 1편은 "표절 등의 연구부정행위로 볼 수 없음"으로 판정하겠습니다.

위원들 : 동의합니다.

바. 연구진실성 조사위원회의 결과보고서 작성

위원장 : 다음은 결과보고서 작성으로는 최종 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 후 전자우편으로 조사위원님들께 배포하여 조사위원님들의 의견을 재차수렴 및 확인 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 : 동의합니다.

위원장 : 다른 안건이 없으시면 폐회 동의안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 동의와 재청

위원장 : 이상으로 0000년도 연구진실성 조사위원회 사건번호[0000-000호]에 대한 회의를 마치며, 결과보고서 작성 후 총장님께 승인을 받은 후 이번 사건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폐회 – 오후 00시 00분(회의종료시간)

위의 회의록을 정확히 하기 위해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위원 전원 날인 함.

0000년 00월 00일

위원장	000	(서명)			
위 원	aaa	(서명)	위 원	ddd	(서명)
위 원	bbb	(서명)	위 원	eee	(서명)
위 원	ccc	(서명)	위 원	fff	(서명)

00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 위원장 귀하

서식 4

예비조사 보고서 양식

제 출 문

OO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 위원회 귀하

본 보고서를 'OOO 교수 연구의혹 관련 예비조사위원회 활동'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2년 OO월 OO일

위 원 장 : OO대학교 OO대학 OOO 교수 (인)
위 원 : OO대학교 OO대학 OOO 교수 (인)
OO대학교 OO대학 OOO 교수 (인)
OO대학교 OO대학 OOO 교수 (인)
OO대학교 OO대학 OOO 교수 (인)
OO대학교 OO대학 OOO 교수 (인)

1. **제보의 내용 :** 본교의 OO학과의 OO 교수가 OO 과제 제안서로 제출한 연구실적물 중에 '중복게재'에 해당하는 연구윤리 위반 사례가 총 8건이 있다는 청원서가 OOO로부터 본교 연구처에 접수됨

중복게재로 제보된 연구업적물 :

1)
2)
3)

2. 제보자 : 교육부에서 밝히지 않음.

3. 제보 접수 및 조사 일정 :

가. OOOO년 O월 O일 : 제보 접수

나. OOOO년 O월 O일 : 제1차 예비조사위원회 개최

(예비조사 착수일 : 제보 접수 후 15 일 이내)

다. OOOO년 O월 O일 : 제2차 예비조사위원회 개최

라. OOOO년 O월 O일 : 제3차 예비조사위원회 개최

마. OOOO년 O월 O일 : 예비조사 결과보고서 작성 (예비조사 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

4. 예비조사위원회 구성 : 위원(5인) 및 간사(1인)

– 위원장 : OOO

– 위원 : 위원 1, 위원 2, 위원 3, 위원 4, 위원 5

– 간사 : OOO

5. 조사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

– 부정행위 혐의 : 제보자가 제기한 사항은 본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윤리규정') 제2조 O항 O호('자료의 중복사용')에 해당함.

– 관련 연구과제 : 해당 과제 없음.

6.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

가. 본교 '연구윤리규정' 14조 2항의 제 2호 "제보내용의 구체성과 명확성"에 관한 판단:

위의 사례 4건의 경우 제보내용이 논문에 대한 자료의 중복사용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

나. 자료의 중복사용에 대한 판단 :

- 모두 국문 논문을 영문으로 재 출판한 경우임.
- 영문 논문에 국문으로 출판된 논문을 인용 표기하지 않는 것은 연구윤리 규정의 자료의 중복사용에 해당될 수 있음
- OOO 교수의 행위는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으나 이종 언어간에 논문을 재차 출간하는 것에 대하여 중복게재라고 정의함으로써 연구윤리에 반한다고 판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교내에서의 추가적인 의견 합의가 필요하고 또한 타 기관의 사례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음.
- 본건과 같이 이종의 언어로 논문을 중복게재 하는 문제는 향후에도 발생될 수 있어 학내 구성원들에 대하여 새로운 연구윤리 정립을 위해 의견수렴이 필요한 부분이라 판단됨.

다. 위와 같은 판단에 근거하여 OOO 교수의 연구 논문 중복 게재 의혹은 본조사를 통해 추가적인 조사와 교내 · 외의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판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첨부 : (1) OOO 공문 및 청원서 (2) 본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 운영에 관한 규정」

서식 5

최종결과 보고서 양식

논문표절 제보(2000-연진-001호)에 대한 본조사위원회 최종결과 보고서

0000. 00. 00.

00대학 연구진실성 조사위원회

다음과 같이 연구진실성 조사위원회 최종보고서를 제출합니다.

0000. 00. 00.

00대학 연구진실성 위원회 위원장(또는 총장) 귀하

본조사위원회 위원장 : aaa (인)

위 원 : bbb (인)

위 원 : ccc (인)

위 원 : ddd (인)

위 원 : eee (인)

위 원 : f f f (인)

위 원 : ggg (인)

목 차

Ⅰ 본조사의 목적 ····· 1

Ⅱ 본조사 위원, 조사 기간, 조사 절차 ····· 1

1. 본조사 위원 ····· 1
2. 본조사 기간 ····· 1
3. 조사 절차 ····· 1

Ⅲ 본조사 내용 ····· 1

1. 제보 내용의 검토 ····· 1
2. 제보된 내용에 관한 관련 내용 검토 ····· 2
3. 피조사자 대상 서면 소명자료 ····· 14

Ⅳ 본조사에서의 주요쟁점 및 그에 대한 논의 ····· 15

Ⅴ 본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판정(안) ····· 16

1. 종합판정(잠정) ····· 16
2. 종합판정의 근거 ····· 17

Ⅵ 본조사위원회의 판정 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 결과 ····· 30

1. 제보자 및 피조사자의 이의제기에 대한 처리 ····· 30
2. 제보자의 이의제기 사항 ····· 30
3. 제보자의 이의제기 사항에 대한 처리 ····· 30
4.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사항 ····· 31
5.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사항에 대한 처리 ····· 31

Ⅶ 본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최종판정 ····· 32

Ⅷ 관련증거자료(서면 소명자료 및 기타) ····· 33

1. 제보자 제보내용 ····· 별책에 첨부
2. 본조사위원회 회의자료 ····· 별책에 첨부
3. 피조사자 서면 소명자료 ····· 별책에 첨부
4. 제보자의 이의제기 내용 ····· 별책에 첨부
5. 피조사자 이의제기 내용 ····· 별책에 첨부

00대학 연구진실성 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보고서

Ⅰ. 본조사의 목적

Ⅱ. 본조사 위원, 조사 기간, 조사 절차

1. 본조사 위원

소속	직급	성명	성별	연락처	비고

2. 본조사 기간:

3. 조사 절차

- 예비조사결과 보고서 검토
- 관련된 자료의 검토
- 피조사자 서면 소명서 검토
- 피조사자와 면접
- 본조사 결론(안) 도출
- 피조사자에게 본조사 결론(안) 송부 및 이의 신청 받음
- 이의 신청에 대하여 검토 및 이의 신청에 대한 답변 서면 통보
- 본조사 결과보고서 최종안 확정 및 보고

Ⅲ. 본조사 내용

1. 제보 내용의 검토

가. 일　시 :

나. 조사위원 :

다. 조사내용

1) 제보 접수 일시 :

2) 사건 관련자 :

3) 제보의 내용 :

2. 제보된 내용에 관한 관련 내용 검토

가. 일 시

일시	장소	참석 위원

나. 조사 내용

표절 의혹 대상		제목	비고
단행본	①		
	②		
논문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다. 조사 대상별 본조사 위원들의 검토 의견과 그 근거

– 조사대상 ①

본조사 위원	검토 의견과 근거
A	
B	
C	
D	
E	
F	
G	

– 조사대상 ②

본조사 위원	검토 의견과 근거
A	
B	
C	
D	
E	
F	
G	

– 조사대상 ③

본조사 위원	검토 의견과 근거
A	
B	
C	
D	
E	
F	
G	

3. 피 조사자 대상 서면 소명 자료

가. 서면 소명 자료 조사

– 일　　시 :

– 검토내용 :

⊙ ⊙ 서면 소명 자료를 통해 밝힌 내용

Ⅳ. 본조사에서의 주요 쟁점 및 그에 대한 논의

1.

2.

3.

Ⅴ. 본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판정(안)

1. 종합 판정 : 연구부정행위 중 00에 해당된다.

재적 위원 7명 중 0명이 참석하여 출석 위원 중 0명이 연구부정행위 중 00에 해당된다고 판정함.

– 근거 : 00대학 연구진실성에 관한 규정

2. 종합 판정의 근거

본조사 위원	판정	판정의 이유
A		
B		
C		
D		
E		
F		
G		

Ⅵ. 본조사위원회의 판정 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 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 결과

1. 피조사자 이의 제기에 대한 처리

가. 본조사위원회 개최

– 일 시 :

– 장 소 :

– 참석자 :

– 내 용 :

– 근 거 :

2. 피조사자의 이의 제기 사항

3. 피 조사자의 이의 제기 사항에 대한 처리

Ⅶ. 본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최종 판정

Ⅷ. 관련 증거 자료(서면 소명자료 및 면접자료, 기타)

1. 제보자의 제보내용 : 별책으로 첨부함
2. 본조사위원회 회의자료 : 별책으로 첨부함
3. 피조사자 서면 소명자료 및 면접자료 : 별책으로 첨부함
4. 피조사자 의의제기 내용 : 별책으로 첨부함

기 획 · 진 행

박은우 한국연구재단 학술진흥본부장
김인호 한국연구재단 학술기반조성실장
김현철 한국연구재단 학술기반진흥팀장
이민호 한국연구재단 학술기반진흥팀 선임연구원

연구부정행위 검증 및 처리 관련

연구윤리 실무 매뉴얼

인 쇄 일 2014년 1월

발 행 일 2014년 1월

발 행 처 한국연구재단 **www.nrf.re.kr**
대전청사 : 305-754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01
Tel. 042-869-9114, Fax. 042-869-6777
서울청사 : 137-748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 25
Tel. 02-3460-5500, Fax. 02-3460-5759

자료관련 문의처 학술기반진흥팀 이민호 (Tel. 042-869-6382)

디 자 인 · 인 쇄 세종디자인기획인쇄 (Tel. 042-633-3227)

[비매품] 본서는 「한국연구재단(www.nrf.re.kr)」 및 한국연구재단 지정 「연구윤리 정보센터(www.cre.or.kr)」에서 전자파일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ISBN 978-89-969000-2-3